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심으로 -

2024.10.4.(금)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영호(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문수(교육위원회 위원), 김천교육너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
공동행동,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제주 아이 특별한 아이, 한국뚜렛병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주관 장애인교육아올다 지원  아름다운재단  장애인교육  무슬다
The Beautiful Foundation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심으로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 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김영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김천교육너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단법인 제주 아이 특별한 아이, 한국뚜렛병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주관

장애인교육아올다

지원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과 어울다

< 토론회 포스터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2024.10.4.(금) 13:30~17: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국회 출입시 신분증 지참 필요합니다.

개회식

13:30
13:50

**인사말
기념촬영**

사회 **최은원**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활동가
수어통역 **신명선, 김성민** 영등포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문자통역 **이시은** 소리들었다 문자통역사



1부

13:50
15:20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토론회**

- 투렛장애·건강장애·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중증중복장애 중심으로 -

- 좌장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발제 1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울다 사무국장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 발제 2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관련 법 개정 초안
- 토론 **김수연** 한국투렛병협회 회장
방세라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
고지영 대안교실 운영협의회, 대안교실 담당 전문상담사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김라경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2부

15:30
17:00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상황 중심으로 -

- 좌장 **이숙정**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발제 **조성연** 장애인교육아울다 전문위원, 초등특수교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 토론 **백동주** 장애인 당사자, 특수학교 전공과
배경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송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참교육실장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강성리 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교수

주최 국회의원 **김영호**(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문수**(교육위원회 위원), **김천교육너머**,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교육아울다,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한국투렛병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제주 아이 특별한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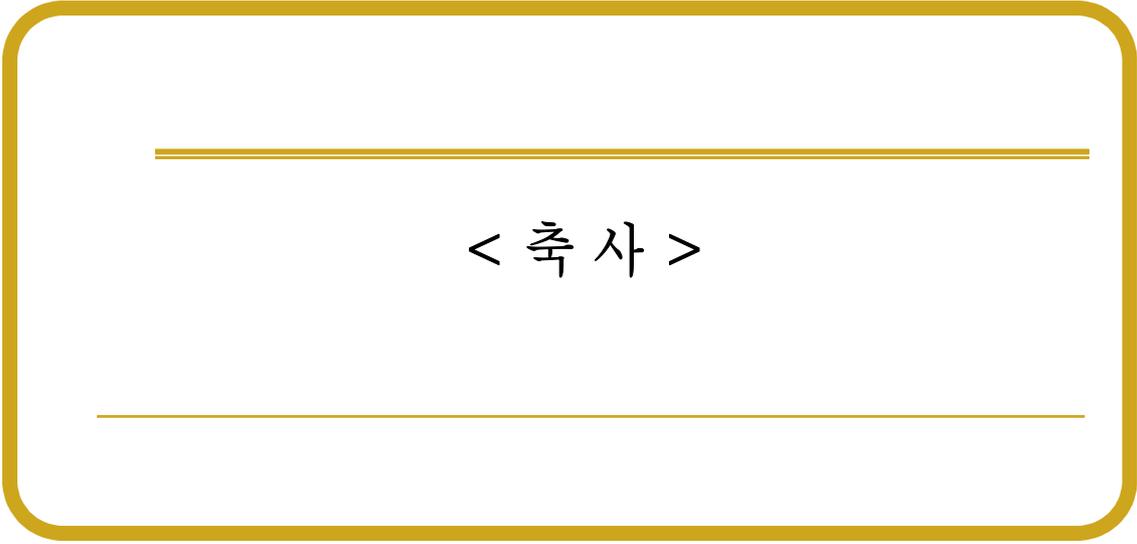
주관 장애인교육아울다 지원 아름다운재단 장애인교육 **아울다** 문의 010-9725-1917, aalda21@daum.net

〈 토론회 일정표 〉

개회식	
개회식 13:30-13:50	사회: 최은원(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활동가) 수어통역: 신명선 · 김성민 수어통역사(영등포수어통역센터) 문자통역: 이시은 문자통역사(소리를 빛다)
	인사말: 국회의원 및 단체 대표 기념촬영
제 1부 13:50-15:20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 청소년의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토론회
	좌장: 김치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3:50-14:05	발제1: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 청소년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이혜영(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장)
14:05-14:20	발제2: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 · 청소년 관련 법 개정 초안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14:20-14:30	토론1: 김수연(한국뚜렛병협회 회장)
14:30-14:40	토론2: 방세라(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
14:40-14:50	토론3: 고지영(대안교육협의회, 대안교실 담당 전문상담사)
14:50-15:00	토론4: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15:00-15:10	토론5: 김라경(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5:10-15:20	종합토론
15:20-15:30	휴식
제 2부 15:30-17:00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 ·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좌장: 이숙정(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5:30-15:45	기념촬영
15:45-16:00	발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 ·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중증중복장애 아동 ·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 중심으로 - 발제: 조성연(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초등특수교사)
16:00-16:10	토론1: 백동주(장애인 당사자, 특수학교 전공과)
16:10-16:20	토론2: 배경민(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16:20-16:30	토론3: 송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참교육실장)
16:30-16:40	토론4: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6:40-16:50	토론5: 강성리(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조교수)
16:50-17:00	종합토론

목차

축사	9
제1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19
I. 서론	21
II.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23
III.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	51
IV. 결론 및 제언	61
V. 참고문헌	68
VI. 의견수렴	69
제2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95
I.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 중심으로	97
II. 의견수렴	125



< 축사 >

축사

김영호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영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을 비롯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장애인교육아울다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토론회를 위해 좌장을 맡아주신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님, 이숙정 단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이해영 장애인교육아울다 사무국장님,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님, 조성연 특수교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신체의 물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소위 ‘턱장애’라고 불리는 ‘뚜렛증후군’을 비롯해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도 교육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장애를 동시에 겪다 보니 특수교사의 1:1 맞춤형 지원과 학교 현장 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는 특수교사도 부족할뿐더러, 의료 인력 지원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적 소외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의료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좋은 교육의 기본은 '평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교육이 더 평등하고 더 세심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4.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축사

김문수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애인교육아울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계층간 소득별 교육격차는 물론이고 장애로 인하여 교육 소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함입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을 논의합니다.
2부에서 진행하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 균등한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주시는 말씀 경청하고 깊이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 10. 4.
국회 교육위원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

축사

김천교육너머

안녕하십니까? 김천교육너머 대표 최현정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받기 어려운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 진행되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육의 기본은 ‘평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평등한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오가는 뜻깊은 논의를 기반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모두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김천교육너머 대표로서 오늘 나온 논의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대한민국 교육이 더 평등하고 더 세심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김천교육너머 최현정

축사

장애인교육아울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교육아울다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받기 어려운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건강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부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의미있고 중요한 논의를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학교 안의 소수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영호 국회의원과 김문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교육아울다도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장애인교육아울다 일동

축사

한국뚜렛병협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뚜렛병협회 회장 김수연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들이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기한을 확대해 왔고 법률의 목적도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라는 수동적·시혜적 의미에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대상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장애아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가 속합니다. 현행법상 ‘장애(disability)’와 ‘특수교육필요(SEN: special educational needs)’ 중의 어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1부 토론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교육권과 인권,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학교는 이상적 교육이념에 따라 가르치고(敎) 돌보는(育) 곳이지만 넘어야 하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르침과 돌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특수교사들도 현재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내에서 UN이 제시하는 인권, 평등, 비차별, 만인을 위한 교육, 모두를 포함, 완전 참여, 등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과 특수교사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육평등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시작부터 기회를 얻기 어려운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건강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모두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한국뚜렛병협회 김수연

축사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 이정옥입니다

먼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 소외 학생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애인교육아울다'와 함께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특별히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서비스 확장을 위해 다학제(多學制)적인 접근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2024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9항을 신설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쟁취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으로 국가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 있기에 국가의 책무로 더욱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출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여전히 교육 서비스의 사각지대, 교육 소외 아동과 청소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아이러니한 상황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장애인, 모든 비장애 아동·청소년이 평등한 교육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4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 이정옥

제1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및 법 개정 초안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및 법 개정 초안

- 투렛장애, 건강장애와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및 중증중복장애 중심으로 -

이혜영(장애인교육아울다 사무국장)

이수연(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I. 서론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CRC)과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는 장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4년 살라만카 선언문 및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도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 개인의 필요를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 를 수립해 가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하여 각 국가에서 살라만카 선언문(SSFA)의 사항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김인희(2006)는 교육 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 이라고 말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과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건강장애 및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그들이 가진 다양성으로 인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나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김민석 외 2023; 류경원, 2019; 양민화 외, 2020; 장애인교육아울다, 2023; 한경근, 2019; 한국교육개발원, 2016).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은 일반교육만으로는 그들의 교육적 필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화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시기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조기에 선정이 되어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568만 4745명(교육부, 2024) 중 2%인 반면, 미국은 7%, 캐나다 10.8%, 덴마크 13%, 핀란드 17.1%, OECD 평균 약 6%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4% ~ 15%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4; 김중훈, 2022; 장애인교육아울다, 2023; OECD, 2015). 이러한 수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시기에 선정되지 못하고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24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4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아기부터 전공과 과정까지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은 115,610명(교육부, 2024)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장애 1,979명(1.7%), 학습장애 1,065명(0.9%), 정서·행동장애 1,785명(1.5%), 지체장애 9,263명(8.0%), 지적장애 57,833명(50.1%), 자폐성장애 22,194명(19.2%), 발달지체 14,301명(12.4%), 의사소통장애 2,600명(2.2%), 시각장애 1,698명(1.5%), 청각장애 2,842명(2.5%)이 있다. 한경근 외(2020)의 기준에 따르면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은 전체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 약 30%인 약 34,683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치유형별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급 19,254명(16.6%), 특수학급 65,966명(57.1%), 특수학교 30,027명(26.0%), 특수교육지원센터 353명(0.3%)이다.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영아포함) 9,216명(8.0%), 초등학교 54,283명(47.0%), 중학교 25,013명(21.6%),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27,098명(23.4%)이 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6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장애 1.7%, 학습장애 0.9%, 정서·행동장애 1.5%로 나타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에 비해 다른 유형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을 살펴보면 건강장애는 1.9%에서 1.7%로 감소, 학습장애는 1.3%에서 0.9%로 감소, 정서·행동장애도 2.1%에서 1.5%로 감소한 것을 특수교육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높은 진입 장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을 ‘특수교육법’의 엄격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반구조화 질문을 구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투렛장애 학부모,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 중증중복장애 학부모, 중증중복장애 청소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초등특수교사, 대안교실 운영 경험이 있는 초등특수교사, 중증중복장애 행동지원 경험이 있는 초등특수교사가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통된 경험과 견해를 이해하고 교육 및 복지 관련 욕구, 정책 개선사항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 초안 등의 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1. 심층 인터뷰 개요

가. 심층 인터뷰 목적

- 본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하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투렛장애 학부모, 건강장애 및 식품알레르기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특수학교 전 공과에 재학중인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 청소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초등특수교사, 대안교실 담당 초등특수교사,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 아동 행동지원 경험이 있는 초등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소외 경험에 대한 공통된 경험과 견해를 이해하고 교육 및 복지 관련 욕구, 정책 개선사항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나. 심층 인터뷰 방법

-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총 7명이 참여하였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특수교육과정을 경험하는 주체는 아동과 청소년이지만 아동 및 청소년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가 학교 및 특수교육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동반자이자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인터뷰에서 참여하였다.
- 인터뷰 참여자는 참여자 모집 광고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 인터뷰 시작에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목적,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고, 인터뷰 시 이야기한 내용은 녹화 및 녹음 된다는 것, 추후 자료에 익명으로 수록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 인터뷰 참여 중 또는 인터뷰가 끝난 후에라도 인터뷰 내용 중에 자료에 수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 중단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과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면 모든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결과물에 수록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다. 또한, 인터뷰 종료 후에도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분석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하였다.
- 인터뷰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 까지 실시했으며, 1명당 1시 30분 ~ 3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분석 방법

-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 중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 중에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주제어를 추출하고 주제어와 관련된 인터뷰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주제어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 자료는 인터뷰 시 기록한 현장 노트, 인터뷰 내용을 녹화 및 녹음하여 전사한 녹취록, 인터뷰 참여자가 미리 작성해 오거나 준비해온 서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하고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유사한 개념의 내용을 모아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라. 심층 인터뷰 참여자

- 인터뷰 참여자는 인터뷰 목적을 이해하고 인터뷰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각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II-1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뷰 참여자	성별	연령대	지역	근무기관 (담당)	교육 경력	자녀 또는 본인		
						성별	이용 중인 학교	장애 유형
학부모1	여	40대	충청	.		남	중학교	투렛장애
학부모2	여	50대	경기	.		남	고등학교	건강장애 (중증천식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3	여	50대	서울	.		여	특수학교 (고등부)	중증중복장애 (뇌병변 지체)
청소년1	남	20대	경남	.		남	특수학교 (전공과)	중증중복장애 (뇌병변 지체)
특수교사1	여	40대	전라	초등학교 (특수교육 운영위원)	15년 이상	.	.	.
특수교사2	여	40대	강원	초등학교	20년 이상	.	.	.
특수교사3	여	50대	서울	초등학교 (대안교실 담당)	25년 이상	.	.	.

2.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을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나열한 뒤 유사한 범주를 공통된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경험이나 견해를 상위, 하위 주제로 묶어 상위범주의 의미를 파악하고 열거된 세부 경험을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며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II-2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범주화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소외 문제	(1)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②학교 폭력 피해 및 소아 우울증 ③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2)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일반학급에서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②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3)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②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 부족 ③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 기관 부족
	(4)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경계선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②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부족
2)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	(1)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②투렛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③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간 지원
	(2)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②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 인식 개선 교육 ③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순회교육 및 의료적 지원
	(3)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 ②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력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③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 기관 확대
	(4)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②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1)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소외 문제

(1)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뭘 하러 학교에 왔냐. 대안학교를 가셔라. 홈스쿨을 하셔라.”

“탈락 이유가 교육을 조금은 따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지체나 지적이나 발달이나 자폐가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희귀질환 아이들은 아무리 있어도 줄 수 없다는 거죠”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은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했을 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었다. 재심사 청구에서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고양, 경남 진주, 경기 남양주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이다.

제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신청한 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교과 선생님이 전부 다 바뀌는 데. 다 알려야 되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실제로 우리 아이와 같은 질환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해서 선정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분이 제가 이제 이런 걸 또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어요. “뭘 하러 학교에 왔냐. 대안학교를 가셔라. 홈스쿨을 하셔라.” 굉장히 냉담했어요. 나는 그래도 쓰겠다. 서류 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제가 서류를 준비를 해서 썼어요.

의사선생님 진단서, 상담센터의 자료들, 어렸을 때부터 모두 해온 기록들 같은 거 다 모아서 다 냈는데 결국엔 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인사하고 다시 오겠다. 중학교로 진학을 하니까 다시 신청을 했어요. 교육청에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담당자님은 좋으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될 수 있다. 우리 노력해보자.” 고 하셨어요.... 잘 알려주셔서 덕분에 서류 준비를 되게 잘했고 잘 제출을 했는데 또 탈락을 한 거예요. 탈락한 이유는 “어느 정도 (일반 교육과정의)교육은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거였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왜냐면 음성틱 나오죠. 운동틱 나오죠. 중학교는 수업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학부모).

시험 보는데 음성틱 튀어나와요. 애들 시험에 방해가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항의가 들어 올 경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탈락 이유가 (일반 교육과정의)교육을 조금은 따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지체나 지적이나 발달이나 자폐가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희귀질환 아이들은 아무리 있어도 줄 수 없다는 거죠(학부모).

② 학교 폭력 피해 및 소아 우울증

“학교폭력도 많았어요. 병신 새끼, 소 새끼.
그리고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외면받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소아 우울증까지 심하게 왔어요.”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은 또래와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소아 우울증을 경험하였다. 또한 심리치료도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 또래 인식이 부족하고 선생님도 인식이 부족하니까 학교폭력도 많았어요.
“병신 새끼, 소 새끼.” 그리고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
요. 언어 폭력이 심하고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했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었어요. 사
과 전부 다 받았어요. 그때 아이가 소아 우울증이 와서 소아정신과에 2년 동안 다니면
서 심리치료도 받았어요(학부모1).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외면받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소아 우울증까지 심하
게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심리센터도 다니고 소리 지르고 툽 때문에 그러죠
(학부모1).

③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을 볼 때 톱으로 인해 평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잖아
요. 그래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도 얘기해요.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아
이는 톱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계속 하면 다시 리셋되고 있을 텐데
요. 이거는 시간을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
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해요(학부모1)

(2)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일반학급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계속 따지고 물었어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중증천식이 있는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모든 교실에 공기 순환 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은 원격수업으로 듣고 있지만 일반학급에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격수업과 일반학급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은 응급 상황시 학교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였다. 학교장이 수학여행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교육청에서 공기 순환 장치를 모든 교실에 고등학교까지 설치가 됐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가 안 됐었는데 고등학교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즐겁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못 가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중증천식이라 공기순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는 그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데 급식에 대한 대책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학교는 자랑 소통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너무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학부모2).

원격 수업도 실시간으로 시간표가 있거든요. 국영수사과 5과목 있는데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가도 되고 가능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입원이나 치료든 아이의 몸 상태가 다 다르니까 실시간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듣기로 들으면 출석이 인정돼요. 출결만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되게 형식적인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사춘기가 되면 화면에 이렇게 자기 얼굴 나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화면에 얼굴 안 나오게 해요... 평가는 원격학교에서 보는 걸로 성적처리를 하거든요. 형식적이고 행정적 처리를 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냥 단지 정말 출석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서 학교 수업도 못 들었는데 평가는 원격학교에서 평가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학부모2).

응급 상황에서 주사도 맞아야 하고요. 응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 응급상황 시에는 주사를 이렇게 놔야 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겁을 먹어요. 지금 학교보건법에는 보건 선생님만 처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보건 선생님도 웬만하면 아이더러 직접 놓게 하라고 그러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보건 선생님이 멀리 계시거나 다른 곳에 계실 때 일반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혹시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겁내고 회피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학부모2).

교장 선생님을 처음 봤거든요. 자기네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난 모르겠다. 이 아이가 수학여행 가면 선생님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추가 업무다. 자기들의 할 일이 아니라 원래의 정해진 업무 외의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라서요.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계속 따지고 물었어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인권이나 교육권 이런 걸 다 떠나서 태도가 되게 막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비웃음 조소 이런 태도 빈정대고 왜 날 괴롭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하는 말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책임져야 된다.” 다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한 명 아이가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큰 사고였는데 그 학교의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때 그 교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그 교장이 고소를 당한 게 자기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릴 수 있지(학부모2).

②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실제로는 호흡기가 막혀서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는 위험까지 가는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중증아이들이예요.”
 “대체식도 거부하는 학교도 있고 응급 주사를 놓는 것도 거부당하기도 하고”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중증의 아이들이 있지만, 인식이 낮아서 두드러기 정도의 경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일단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서 두드러기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호흡기가 막혀서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는 위험까지 가는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중증아이들이예요. 두드러기 정도로 멈추는 경우는 경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카페에다가 올렸던 게 그거예요. 장애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인식 의미가 정말 우리가 보는 장애인 우리 정말 배웠던 장애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데 장애인이야. 장애가 있는 거야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장애라는 건 그게 아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법에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영양교사 따로 만나야 하고 담임 따로 만나야 하고 다 따로 개별적으로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화교육회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으면요. 일일이 엄마들이 하지 않고 특수교사와 소통하면서 체계 안에서 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톡방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학부모2).

알레르기 항원이 여러 개가 있거나 저희 아이는 한두개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에요. 식품 알레르기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급식뿐만 아니라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거예요. 학교에 전화해서 보호자들이 영양사선생님,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을 다 따로따로 면담 요청하고 부탁하고 지금은 그러거든요. 규정이나 그런게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꼭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식도 거부하는 학교도 있고 응급 주사를 놓는 것도 거부당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천식으로 특수교육대상자니까 개별화교육회의에서 지원도 요청하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보호자들은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서 더 힘든 거죠. 식품 알레르기도 건강장애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건강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까다로워요. 기존에 선정된 사례가 있는 질병이 아니면 선정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선정될 때 교육청에서 천식으로 선정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법에 나온 건강장애의 정의에서 범위를 좀 더 확대되거나 완화되는 쪽으로 바뀌면 좋겠어요(학부모2).

(3)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 부족

“중·고등학교 다니는 뇌병변장애 학생들도 물 먹는 걸 조절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실무사님 두 분이 화장실을 데리고 간 상황은 나머지 4명 학생은 방치 상태인 거예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머리를 치거나 발로 차고요. 물기도 해요. 머리 같은 데 짹 물어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은 대소변 교육이나 급식 교육 등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나 특수교육실무사가 1:1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유형이 다양하다보니 행동문제가 있는 또래 아동·청소년에게 맞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부담이 돼서 학교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고 보고하였다.

대소변을 가려서 생활할 때 인지 능력이 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대소변 연습이 안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실수하면 내가 완전히 애 옷에 이불이랑 다 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입원 생활하는 동안에 대소변 가리기 연습을 했어요. 실수하면 시트하고 환자복 하고 다 내놓고 새로 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이 먼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애를 안고 일단 화장실에 가서 앉히고 놀 때까지 조금 앉아 있는 거고요. 1시간 뒤에 가서 또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병이 생길 정도로 연습을 시켜서 대소변을 가리고 나서 초

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화장실 갈래요.” 이게 안 되는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습해 주시던 선생님이 좋으신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 한 명밖에 없는데 5명 중증의 아이들을 혼자 지도해야 되는데요. 실무사 한 분이 계시지만 화장실에 가서 누군가는 또 잡고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휠체어에서 내리고 할 때는 두 분이서 하셔야 해요. 선생님과 실무사님 두 분이 화장실을 데리고 간 상황은 나머지 4명 학생은 방치 상태인 거예요(학부모3).**

밥 먹는 거는 저나 아이 아빠도 밥 먹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반찬 다 차려서 가득 먹여서 보냈어요. 점심은 못 먹을 게 뻥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포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하교하면 간식부터 먹여서 버텨내고 치료하고 집에 와서 제대로 먹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정한 교사를 만난 거예요. 교실에서 급식하던 상황이 이제 고학년이 되었다고 급식실에 가서 단체 급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먹여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생전 처음 남자 선생님과 단둘이 밥 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4학년 때 선생님을 좋아했는데요. 이분이 “너가 나랑 밥을 잘 먹으면 4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같이 가줄 게.”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애가 입을 벌리기 시작한 건 거예요. 선생님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학교 급식이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 한 명이 딱 붙어 앉아서 제일 구석에 데려가서 시선을 가려서 막 흥분하지 않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먹이셨던 거예요. **진짜 급식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학부모3).**

특수학교 전공과에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있어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냥 교실에 있는 거예요.** 교실에 저처럼 뇌병변장애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학생들도 있어요. 자폐성 장애아들 하고는 아예 소통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잡으러 다니기 바쁘고요. 그 아이들 앉혀놓기 바빠요. 저희 반에는 9명 있어요. 장애 유형은 다양하고요. 특수교육실무사 한 분이랑, 선생님이랑 부담임 선생님이렇게 세 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 세분도 풀로 계속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간 타임으로 나눠서 있어요. 보통 담임쌤은 5시간 정도 있어요(청소년1).

저희반에 자폐학생들이 많다 보니 같은 소리를 반복해요. 때리기도 하고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머리를 치거나 발로 차고요. 물기도 해요. 머리 같은 데 **꼭 물어요(청소년1).**

중·고등학교 다니는 뇌병변장애 학생들도 물 먹는 걸 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 먹으면 안 먹으려 해요. 왜그러냐면 소변 보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할 때는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안 먹어요.** 화장실 지원받을 때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요청을 해야 하니깐요(청소년1).

②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 부족

“마땅한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는 우리 아이 아닌 것 같은 상태로 학교에서 골치덩어리 이미지라고 저는 봐요.”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버려요.”

중증중복장애 아동이 물건 던지고 욕하는 행동 등을 할 때 학교에서 마땅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특수교사가 행동지원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마땅한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하니 까요. 지금은 학생 생활 규정 이런 게 작년 12월에 나와서 교권침해시 학생생활 규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게 됐어요. 출석 정지라든지 학생을 징계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출석 정지를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협조도 안 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안 됐고요. 5일 연속 하루에 세 번 이렇게 일시적 분리 조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은 출석 정지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전에도 떼쓰기 정도로 복도에서 때구때굴 구르고 물건 쿵쿵 치고 물건 던지고 욕하고 그거는 계속했죠(특수교사 2).

한 번도 우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작년에 담임 선생님 빼고는 가정 방문 간 적이 없어요. 작년 담임은 그래도 일반 학급 담임 그런 식으로 다 일임하죠. 그런 아주 단편적으로만 봐도 딱 그렇더라고요. 관심 없고요. **애는 우리 아이 아닌 것 같은 상태로 학교에서 골치덩어리 이미지라고 저는 봐요.** 그건 겉으로 봐서 말할 때에는 우리 00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는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가정 방문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을 때도 하다못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것도 바로 결제 안 해줘요.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 봐 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제가 난리를 쳐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기운 속에 있는 조직 안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다 기운이 빠지잖아요.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로 계속 쓰고 있어요(특수교사2).**

심리적 지원이 슬슬 들어오고는 있어요. 위센터 상담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학교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요. 몇 학교에 돌면서 순회하고요. 어떤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정도의 아이들 정도만 도움을 받는 정도고요.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때쯤 되면 이미 자기 글도 못 읽고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아는 척 하며 이렇게 입모양으로 흉내 내고 너무 슬프죠.**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더 심각한 거는 중증장애 아이들이 제일 심각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아이들에게요.

어떤 심리정서적인 문제, 가정적인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이 일단 제일 어려워요. 가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업을 이렇게도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하고 연결돼 있고요. 문제를 보인 애들은 대체적으로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에게요. 아이는 텔레비전 중독이었고요. 지금은 중증장애인데 자폐 성향이 좀 많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고요. 여기에서는 가정이 다 박살이 난 가정은 가정이 없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 싶은 정도의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요.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복구가 안 돼요(특수교사2).

③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기관 부족

“그 형 또한 갈 데가 없어 가지고요.”

“졸업하고 갈 곳이 없구나.”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특수학교 전 공과에 진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반에 휠체어 타고 있는 형은 중학교도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전공과 반도 같아요. 그 형 또한 갈 데가 없어 가지고요. 굉장히 그냥 순둥순둥하고 그런 스타일이예요. 두 살이나 많은데요. 화가 나고 맞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많이 힘들고요(청소년1).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공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졸업하고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선배님들 노력하는 거에 도움을 드리면 우리 애가 졸업할 때는 내가 학교를 조금 고를 수 있었던 것처럼 고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없어요. 에너지 드려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5년씩 걸리는 거 봐요. 그리고 해마다 졸업생이 나오니 지금 이미 몇 개 만드는 거에 졸업생 선배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비전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도 있어요. 복지관에 그나마 발달장애 쪽에 만들어진 챌린지 2인가 그거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거 네 군데가 있어요. 모두 서울이구요. 주 4일이에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해요(학부모3).

(4)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① 경계선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불가 사례

“교육청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학습장애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애매한 기준의 아이를 선정하는 것에

힘을 싣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수교사는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경험하였다. 또한 다른 특수교육대상자보다 학습장애로 선정 받는 데 기준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특수교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면 학습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면 지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수준이 70이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사회성이 현저히 어려움을 보여야 지적장애라고 해요. 제가 만났던 학생을 예를 들어보면 지능이 65정도, 누가 보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교육과정 따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회성을 평가 했을 때 높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적장애로 선정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를 학습장애로 구제할 수 있느냐.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인 학생이 기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능은 지적인데요. 그런데 사회성은 어려움이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학습장애의 기준은 부합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제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생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진단평가위원으로서 이런 아이를 만날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른 검사도구로 사회성검사를 재 실시해보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선정 배치하거나. 애매하게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70이하로 측정되지 않더라도 유의 수준 안에 들게 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선정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팀에서 평가를 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애매한 기준의 아이를 선정하는 것에 힘을 싣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특수교사1).**

예를 들면 대부분 지능이 많이 낮는데 사회성은 매우 우수해요. 사회성을 비장애 기준으로 보면 우수하지 않아요. 애매한 수준 70 ~ 80 언저리예요. 어머님들께서 사회성 검사 때 보통 어머님들이나 일반학급 통합교사가 보고하는 형식에 검사를 실시해요. 그런데 이 검사의 보고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재안내한 다음에 다른 사회성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요. 저희가 점수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깐요. 경계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류했다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재선정하는 방법으로도 해요.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기간을 보냈다면 몇 개월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사회성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이 가능해요.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난독증을 포함한 기초학력 관련된 그 영역들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정책안에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법률이 마련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난독과 관련된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습장애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초학력으로 분류해서 지원받기를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특수교사1).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습장애가 많아져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학습장애**

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허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지역을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 볼 수 있는 정보 안에서요. 몇 개 지역은 조금 그래도 루즈해졌어요. 불일치 모델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특수교사1).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모든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 가치 아래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아이가 계속 누가적으로 기록되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의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면 이 아이는 학습장애가 맞지 않을까...(특수교사1).

②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부족

“ 참 안타까운 게 일반 선생님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진짜 안쓰러운 게 3학년 이전에 선정을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

“ 기초학력 관련 지원이 아주 촘촘하다면 저는 학습장애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

“그 아이들이 완벽하게 실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수교사는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의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경험하였다. 경계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학생 학습지도에도 관심도 있고 혹은 경계에 걸렸는데 지원 못 받는 친구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학습장애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잘 보여요. 그 아이가 지능이 정상범주라고 하지만 경계선에 걸쳐있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학습문제 뿐만 아니라 적응면에서도 눈에 띄어요.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사회성도 약간 결함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래에 비해 행동이 미성숙해 보이거나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 저 아이 학습은 어때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가운데 낀 아이구나. 부모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진단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모두에 눈에 보이는 거죠. “선생님 이 아이가 딱 우리 아이예요.” 담임선생님께 “솔직히 우리 아이들, 우리 특수학급에 있는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 아이보다 훨씬 더 학습 수준 높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일반 선생님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 아이가 지적장애로 선정 받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라고요? 혹은 학습장애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시는 일반 선생님이 많아요. 학습장애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도 선정이 되고 나서야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나누

어 보시는 경향이 크지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선정되지 못하고 학습결손이 누적되는구나. 얼마 전에 교감선생님 뺨 때리는 어린 친구 뉴스에 나왔잖아요.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굉장히 학교에 많거든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 진단이나 위클래스 상담센터, 심리상담 클리닉에서의 진단 처치 여부를 확인해요. 그리고 처치의 지속기간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반학급 안에 있잖아요. 일반교사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체계가 부실하고 있어도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 가르칠 수 없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이 아이들이 있어서 안타깝죠(특수교사1).**

저는 학습장애 아동들이 진짜 안쓰러운 게 3학년 이전에 선정을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통해 먼저 지도하는 것을 권장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1학년 ~ 2학년 때까지는 그 아이들이 조금 느리게 발달할 수 있으니까요. 발달지연일 수 있으니 기초학력을 통해 지도하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선정하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지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완벽하게 실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학습장애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교사가 주변에 없다면 그냥 기초학력 혹은 부진아 관련된 지원만 연장하여 받다 졸업하거든요. **기초학력 관련 지원이 아주 촘촘하다면 저는 학습장애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제가 지원하는 것보다 기초학력 프로그램 안에서 촘촘하게 관리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현저한 어려움을 계속 갖는다면 판단해서 특수학급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장애로 선정되기 이전에 부진아 지도 그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교육청 기초학력부진 지도 따라 학교 내 기초학력 보충 따로 진행되는데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투여되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특수교사1).

2)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

(1)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왜 도대체 떨어뜨리느냐.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다.”

“미국처럼 기타 건강장애로 넣고 싶어요”

학부모는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정서행동장애 유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기타 건강장애로 분류해서 선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로 만든다면 신경학적 장애나 이런 쪽으로 넣고 싶죠. 미국처럼 기타 건강장애로 넣고 싶어요(학부모1).

특수교육대상자 탈락을 하니까 제가 재심사청구를 했어요. 제가 “왜 도대체 떨어뜨리느냐.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다.” 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다시 재고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다닌 지 거의 10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병원도 다녀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이라 자주 갈 수 없고요.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늘 상의드려요. 우울증 한참 심할 때는 아이랑 1:1 상담도 꾸준히 했어요. 아이가 바닥 치고 올라오니까요. 중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떨어졌지만 장학사님이 자료를 다 보시고 나서는 안타까웠으나 봐요.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주시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책자도 다 드리고요. 투렛장애와 관련된 설명을 제가 다 드리고 KBS 아이뽀뽀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짧게 보고요(학부모1).

②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인식 개선 교육

“교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욕택이 나온다거나 음성택이 나와버리면 빨리 알려서 소통하면서 해야 해요.”

학부모는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매 학기 초에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택 때문에 장애 인식 교육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인식 교육을 반 아이들한테 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알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교육청에 인권교육과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초빙해서 오시면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투렛장애에 관해서 장애 인식 교육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저 혼자 “이걸 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들어주지도 않고요(학부모1).

매년 저는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다 알려야 돼요. 매 학기 첫 학기에는 매년 매 학기마다 선생님들께 모든 선생님께 다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에요. 욕택이 나온다거나 음성택이 나와버리면 빨리 알려서 소통하면서 해야 해요. 그래서 늘 새 학기 이때는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다 같이 모여서 소통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학부모1).

③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간 지원

“음성틱이 있다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시험 보게 해달라.”
“정말 힘들 때는 아이가 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요.”

학부모는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시험을 볼 때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이 힘들고 지필고사 시험 기간에는 “음성틱이 있다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시험 보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학교도 힘들어질 수 있어서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걸 의사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길잖아요. 이 시간이 애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 때는 아이가 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보건실에는 침대 4대가 있어요. 커튼이 없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면 보건실에 가는데 커튼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아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보건 선생님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애가 정말 힘들면 그렇게 가서 커튼 치고 조금 쉬었다 와요(학부모).

(2)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건강장애 선정 취소를 냉정하게 안 해요.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을 지켜봐요”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등교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수교사는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할 때는 유예기간을 6개월 ~ 1년 정도 두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부모는 건강장애 학생의 정의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 등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도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건강 장애가 너무나 다양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이 아이들이 아픈 정도도 다양하고요. 건강장애였지만 회복이 돼서 학교에 오면 원래는 선정을 취소했어요. 바로 3개월 안에 정말 냉정하게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팠다가 회복은 됐는데 다시 악화가 된 거예요.

악화가 됐는데 재선정하려면 또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 사이에 애가 적절한 교육도 못 받고 방임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이 한 번 민원을 세계 내세요. 그때부터는 건강장애 선정 취소를 냉정하게 안 해요.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을 지켜봐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선정 취소를 하라고 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좀 더 지켜봐요(특수교사3).

건강장애 학생 정의를 기간으로 이렇게 몇 개월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등교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요(학부모2).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개별화교육회의가 있거든요. 엄마들이 영양교사 따로 만나야 하고 담임 따로 만나야 하고 다 따로 개별 각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개별화교육회의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일일이 엄마들이 하지 않고 특수교사와 소통하면서 그런 체계 안에서 제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학부모2).

②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인식 개선 교육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요.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두드러기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는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해 인식이 낮다고 경험하였다. 앞으로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일단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요.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두드러기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이 있어요. 앞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요. 건강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장애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해요(학부모2).

③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순회교육 및 의료적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의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대체식 제공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장애의 정의에서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사는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학부모는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에 의료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을 평가할 때 대체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학부모는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체식 지원과 응급주사 등의 의료적 지원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무슨 교육이나 치료가 먼저지. 그런데 아프면서도 맨날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냐. 이제 그런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원격교육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고요. 이제 퇴원을 했어요. 학교에 와요. 그런데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 낫지 않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학교에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복귀를 하면 원격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왔다 안 왔다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나갈 수 있어야 돼요**(특수교사3).

응급 상황에서 주사도 맞아야 하고요. 응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나 특수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 응급상황 시에는 주사를 이렇게 놔야 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겁을 먹어요. 지금 학교보건법에는 보건 선생님이만 처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보건선생님도 웬만하면 아이더러 직접 놓게 하라고 그러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건 선생님이 멀리 계시거나 다른 곳에 계실 때 일반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혹시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겁내고 회피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학부모2).

코로나 때 제가 아이 학교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평가 대신에 과제를 줘라. 수행 과제를 줘서 예를 들어서 역사과목이면 역사 과제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제 같은 거요. 이런 식의 대안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격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못 듣는 경우에 건강장애 학생들한테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리포트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TF 회의를 했었을 때, 평가하는 국장은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했지만요. 학교에서도 제가 평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사들이 그러면은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일반 학생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한 거죠**(학부모2).

대체식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지원 인력이 있으면 대체식도 확인하고 지원하겠죠. 예산으로 1인당 대체식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대체식 제공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학생 수 파악해서 대체식으로 지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학교도 신경 쓸 게 없거든요(학부모2).

대체식도 거부하는 학교도 있고 **응급 주사를 놓는 것도 거부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매뉴얼도 없고 규정도 없어서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천식으로 특수교육대상자니까 개별화교육회의에서 지원도 요청하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보호자들은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서 더 힘든 거죠. 식품 알레르기도 건강장애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건강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까다로워요. 기존에 선정된 사례가 있는 질병이 아니면 선정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선정될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전에 천식으로 선정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범에 나온 건강장애의 정의에서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학부모2).

(2)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

“장애학생 행동지원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게 필요한 한 것 같아요.”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 필요할 때 저한테 내쫓았거든요.

일시적 분리의 책임은 특수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급이 아니라 그 공간도 관리자다.”

“계속 미세하게 촘촘히 공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행동 중재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니면 교사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해요.”

특수교사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행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수교사는 통합학급에서 분리조치 할 때 미세하게 특수학급으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특수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수교사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행동중재 전문가나 특수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장애학생 행동지원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임시적 분리를 요청하게 1학기 극심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 시기를 견디고 1학기 말 교육과정 평가할 때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건 선생님 일이지 않아요. 이제 분리를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 필요할 때 저한테 내쫓았거든요. 일시적 분리의 책임은 특수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급이 아니라 그 공간도 관리자다. 분리도 특수학급으로 하고요. 통합교육 컨설팅도 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세우는데 드디어 10월에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왜 나한테 전화해요. 교무실로 바로 전화하면 되지요. 교감 선생님도 데리고 아이를 일시적 분리해서 데려갔어요. 데려 갔다가 다시 안정이 돼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직 그 수업 안 끝난 시간인데 통합학급으로 데려가야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와요. 이런식인 거예요. 계속 미세하게 촘촘히 공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바꾸는데 너무 힘든 거죠(특수교사2).

행동 증재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니면 교사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해요. 사실 특수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사람이 특수교사이고 업무를 확 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줄여서 통합적으로 보는 게 사실 더 맞다고 보기는 해요. 사실은 통합학급 교사랑 저랑 같이 했으면 훨씬 낫겠죠. 저랑은 분명히 행동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오롯이 애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 제가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특수교사2).

위기행동 관리 계획에 1단계 일시적 분리했을 때 1차로 교감 선생님이 오시고요. 교감 선생님 안 계실 때가 있잖아요. 2단계, 3단계 누가 있는지 세워야 되잖아요. 2단계는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야 된다. 3단계 교무 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막 뒤집어지고 폭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책을 세워놔야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책임은... 이러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없죠. 그냥 협의해서 세운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저 하나예요. 책무성을 물어야지요. **관리자들이 하는 말은 “내가 애를 지도한다고 해서 애가 말을 듣겠어.” 예요.** 그럼 이 아이는 내 말을 처음부터 들었냐고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어떻게든 잘 만나가려고 이 행동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책임 있게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잖아요(특수교사2).

②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려면 1.5명은 두어야 해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생 수 비례해서 간호사 등 지원을 해야 해요.”

“AAC 교육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1.5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와 의료적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교육과정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고 1박 이상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비용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려면 1.5명은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고학년은 2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요. 노동권이 보장되어서 특수교육실무

사 선생님들도 쉬어야 해요. 그런데 쉬면 공백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와서 50 플러스 일자리 이런 분들 오시면 직접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이 되거나 파악이 되어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냥 저기 인력이 부족하니 가서 하세요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애가 이런 표정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다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 인력이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이 불안해서 실무사가 공백인 상황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여유 인력이 있어야지만 실무사분들도 마음 편하게 쓴다는 차원에서 학생 1인당 1.5배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해요(학부모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생 수 비례해서 간호사 등 지원을 해야 해요. 1대 1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석션이 필요한 상황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해야 하고요. 급식에 있어서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이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 상황이거든요. 위루관이나 코줄로 경관영양을 실시할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붙어 있어야 하는 데요. 그 인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엄마나 활동지원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2명 정도를 얹혀놓고 간호사 한명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학부모3).

하이테크놀로지는 전부 다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부모 교육하는데 세 단계로 나뉘요. 아예 의도가 없는 아이. 의도는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전달이 어려운 아이. 세 번째 우리 아이처럼 의지도 확실하고 전달 능력도 되는 아이. 이 세 단계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우리 학교도 계속 지원하는 데요. 애들이 달라지는 게 행정가들이 봐도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육 과정 안에 AAC 교육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학부모3).

1박으로 체험학습 갔을 때 이런 비용들이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시도하지도 못했어요. 장애인 차량도 필요해요. 통합에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인력도 없어요. 이 아이의 졸업여행 비용을 엄마가 내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제주도 가서 다닐 수 있는 특장차 비용과 지원인력이 없어서 동반하는 엄마한테 드는 추가 경비를 엄마가 다 내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 특수학교에서는 고3이어서 졸업여행을 위해서 제가 3년을 준비했어요.

그 앞에 졸업 여행 경비로 나왔던 게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1명당 5천 원 정도 경비였어요. 졸업여행이라고 갔다 온 게 **아침에 스쿨버스 타고 가서 허허벌판에 가서 헤메다가 밥 간단히 한 끼 먹고 차 타고 오는 정도니까요.** 엄마들이 다음에는 안 가려고 해요(학부모3).

③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 기관 확대

“학교 같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 있었으면 좋겠다.”
“전공과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갈 곳에 대한 힘들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 해서요.”

학부모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 이후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같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공과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갈 곳에 대한 힘들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 해서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려면 재를 끄집어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엄마가 막 정보를 캐서 여기저기 서류 내고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학령기가 되면 당연히 학교를 가는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평생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20세부터 한 30세까지는 여기. 40세부터 50세 정도까지는 여기. 60세 이후는 여기로 정해야 있어야 해요. 20대하고 40대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기는 힘들대요. 이게 체력적인 게 달라서요. 그렇게 분할해서 당연히 가는 평생교육기관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학부모3).

(3)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구

①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그 아이한테 계속 누적된 실패를 계속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5학년, 6학년이 돼서 심각한 학습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일치 모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수교사는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예전처럼 불일치 모델을 써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이 선정 시기를 놓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심각한 학습장애가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불일치라는 건 그 아이가 지능이 일반적인 교육에 반응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 부진이라면 선생님이 열심히 지도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부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정 수준 이상 반응할 수 없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지연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선생님이 일반교육 세팅 안에서 면밀하게 교육할 수 없는 수준의 아이라고 판단해요.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 좀 지켜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해도 6개월이 너무 길다고 봐요. 그 아이한테 계속 누적된 실패를 계속 강요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 아이를 더 실패하게 6개월 끝나고 나면 또 방학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학습장애로 선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6개월을 충실히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그다음 학기 6개월, 그다음 학기 6개월 돼서 놓치고, 놓쳐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5학년, 6학년이 돼서 심각한 학습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특수교사1).

저는 불일치 모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시스템이 후진적인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위기고요. 설사 그런 지원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을 통해 대부분 일정한 교육 경험을 가졌을 텐데요. 그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특수교사1).

너무 속상한 게 때때로 지능은 평균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습수준이 특수학급 친구들보다 낮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을 특수교육을 통해 만났어요. 그럼 지능이 경계선 정도 이상이라면 꾸준히 지도하면 국어고 수학이고 차분히 올라가요. 학습장애 친구가 부모님께서 옆에서 케어해 주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일반 교육 상황에 있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저희 특수학급 지적장애 학생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게 되는 거죠**(특수교사1).

②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대안 교실만 할 수 있는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 전담 교사가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안 교실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에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의 특성과 어떤 어려움에 근거해서 특별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재구성해서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특수교사는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안 교실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 어렵다면 대안 교실에 유연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 통합교육적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안 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학급으로 명시하고 전담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학교 내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있더라고요. 대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활성화하지 못했지라고 운영하면서 이제 보니까 전담 교사가 없어요. 이것도 항상 이런 거 누가 할래? 이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해요. 왜냐하면 힘든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서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는 학교들이 많이 없고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그럼 누가 할 거냐?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요. 위클래스 전에도 존재를 했는데요. 위클래스가 생기면서는 상담사

들이 이 업무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대안교실 운영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상담 교사들이 많이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안교실 협의체가 있어서 갔더니 상담 교사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힘든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 교실만 할 수 있는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 전담 교사가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특수교사3).**

학교에 적어도 이 아이들이 학년당 2~3명은 있어요. 초등학교는 적어도 3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해가지고 적어도 3개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년당 1개 아니면 적어도 학교에 1개 이상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 해요. 그런데 지금 대안교실 사업을 봤더니 전담 교사를 아직 발령 내기가 어려운 게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안교실이라는 게 없어요. 교사 TO가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학생당 몇 명으로 교사를 양성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정원 계산하는 게 다르거든요. 대안교실을 담당하는 교사의 정원을 산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안 교실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에 있어야 돼요. 대안 교실이 아니라 전담 교사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대안 학급으로 하고요.** 그러면 일반학급 그다음에 대안교실 그다음에 상담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교사의 정원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정적으로 대안교실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이 만들어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씩 만들어지면서 운영을 하고 대안교실도 확대하고 교사도 확대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봐요(특수교사3).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상들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가 다르더라고요. 중·고등학교의 대안교실은 대부분 학교를 포기하기 직전인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또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그래서 정말 대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돼요. **초등은 예방하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체계는 특수학급이랑 다를 게 없어요. 말만 대안교실인 거고 운영 체계는 되게 비슷해요. 그냥 정규 수업시간에 일부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자기 반 들어가고 힘들면 많이 와 있고 안 힘들면 적게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위클래스하고 차이점은 위클래스는 상담 정해진 기간에 상담을 하러 잠깐 왔다 가는 거고요. 대안교실은 수업하는 공간이죠. **이 아이들의 특성과 어떤 어려움에 근거해서 특별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재구성해서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특수교사3).**

3. 소결

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소외 문제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 일차적 문제는 특수교육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있음. 재심사 청구에서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일반 교육과정의)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되지 않은 것임.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고양, 경남 진주, 경기 남양주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래와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투렛장애 아동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소아 우울증까지 와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을 볼 때 턱으로 인해 평가조정이 필요함.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조정이 시행되지 못한 경험을 함.
-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 중증천식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모든 교실에 공기 순환 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음.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은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듣고 출석 인정도 받고 있으나 평가는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진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함. 이로 인해 학생이 받은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함. 또한 응급 상황 발생시 학교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부족함. 학교장이 수학여행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부적정한 태도를 보임.
 -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 중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중증의 아이들이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두드러기 정도의 경증이라고 보고 있음. 중증 식품 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고함.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대소변 교육이나 급식 교육 등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나 특수교육실무사가 1:1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장애유형이 다양하다보니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맞는 경우도 있음.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부담돼서 학

교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음.

- 중증중복장애 아동이 물건 던지고 욕하는 행동 등을 할 때 학교에서 마땅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학교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특수교사가 행동지원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음.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까지 가중된 중증중복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더욱 큼.
- 중증중복장애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나서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하고 있음. 어렵게 전공과에 진학하더라도 전공과 졸업 이후에 갈 곳이 부족해서 힘들어 함.

□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다른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는 데 기준이 높음.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학습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함.
-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금의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부족함. 경계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요구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을 정서행동장애 유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기타 건강장애로 분류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초에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시험을 볼 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함.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함.

□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요구

-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할 때는 유예기간을 6개월 ~ 1년 정도 두는 것이 필요함. 건강건강장애 학생의 정의를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 등하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교

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함.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도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함.

- 건강장애 및 식품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낮은 인식을 경험하고 있었음.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
 -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이 필요함.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에 의료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건강장애 학생을 평가할 때 대안적 평가가 필요함.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체식 지원과 응급주사 등의 의료적 지원 또는 매뉴얼의 필요함.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요구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행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함. 통합학급에서 분리조치 할 때 미세하게 특수학급으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특수교사가 전담하게 되는 부당함이 발생함.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행동중재 전문가나 특수교사가 더 필요함.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1.5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와 의료적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함. 교육과정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고 1박 이상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비용 지원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함.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고등학교나 전공과 졸업 이후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이 확대되어야 함.
-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요구
-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에는 불일치 모델을 적용해야 함.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정 시기를 놓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가 됨.
 -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안 교실이 필요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 어렵다면 대안 교실에서 유연하게 통합교육적인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학급으로 명시하고 전담 교사를 배치해야 함.

4. 시사점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투렛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진단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투렛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수교육적 지원이 어렵다면 대안적인 교육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안정적으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학급 편성과 전담 교사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장애 및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지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장애와 중증중복장애 영역에 분류되는 질병이나 장애 유형과 정도 따라 교육적 지원이 다양함으로 이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적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지원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지원,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도특수교육원 설치가 필요하다. 경남특수교육원, 대구특수교육원, 대전특수교육원, 충북특수교육원과 같은 시도특수교육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Ⅲ.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

1. 법 개정 초안 개발 과정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인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발제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개발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초안의 개발은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알리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 회의 참여 권한을 부여하여 함께 온라인 및 대면회의를 개최하였다(1차 2024년 6월 20일, 2차 2024년 8월 30일, 3차 2024년 9월 2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심층 인터뷰 1차 분석 결과 이후인 2024년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 내용 요소들을 확인하고 설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장애인인권단체 및 특수교육단체 등에게 초안 검토를 받았다. 이러한 공개 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1차로 완성하였다. 2024년 9월 10일 최종 검토를 통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초안을 개발하였다.

2. 법 개정 초안

가. 특수교육법

현 행1)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u>지원인력배치</u>·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p> <p>3. ~ 12. (생략)</p> <p>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지원</u> <u>인력배치·신변처리지원</u>----- ----- -----.</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학생을 포함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u>제11조의2(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u></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생략)</p> <p>5. 정서·행동장애</p> <p>6. ~ 8. (생략)</p> <p>9. 건강장애</p> <p>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p> <p><신설></p> <p>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생략)</p> <p><신설></p> <p>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p>	<p>운영)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각급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실습 등의 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도 특수교육원은 고등학교 과정(전공과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한다.</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5. 정서·행동장애(투렛장애 등을 포함한다)</p> <p>6. ~ 8. (현행과 같음)</p> <p>9. 건강장애(식품 알레르기 등을 포함한다)</p> <p>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8조의 규정은 전공과의 학생에 대하여 준용한다.</p> <p>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영아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2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p> <p>2. ----- :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학급-----.</p>
--	--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 :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1학급-----.

4. ----- : 특수교육대상자 5인마다 1학급-----.

5. 전공과의 경우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의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①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인으로 한다. ②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p>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① ~ ② (생략)</p> <p>③ <u>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신설></p>	<p><u>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u></p> <p>③ <u>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u></p> <p>④ <u>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지원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지원인력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정에 따라 지원인력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p> <p>④ <u>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변처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u></p>
--	---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교육지원인력</u> 배치 등의 인적 지원</p>	<p><u>인력의 배치 및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 ----- ----- -----.</p> <p>1. (생략)</p> <p>2. <u>교육지원인력, 신변처리지원인력</u> 배치 등의 인적 지원</p>
---	---

시행 예정2)	개정안
<p>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생략)</p> <p>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u>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u>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생략)</p>	<p>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시행예정안과 같음)</p> <p>⑨ ----- <u>필요한 경우</u> ----- ----- ----- ----- ----- <u>제공하여야 한다.</u> ----- -----.</p> <p>⑩ (시행예정안과 같음)</p>

1)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2)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현 행 ³⁾	개 정 안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③ (생략))</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p>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③ (생략))</p> <p>④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3. 법 개정 초안 주요 내용 설명

가. 특수교육법

1)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의 명시화 및 확대(안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8항 나목은 투렛장애를 정신장애인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투렛장애가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된 것이 근래의 일이기에 특수교육 현장 및 사회 전반에서 투렛장애가 ‘장애’로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투렛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서·행동장애에 “투렛장애 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5항에 투렛장애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함께 개정해야 위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⁴⁾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

3)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4) [시행 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 ‘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령기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등록 장애인으로서의 투렛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투렛장애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정서·행동장애에 해당된다고 진단·평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따라서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를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참고하여 학령기인 “만 6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과민성 쇼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품 알레르기를 건강장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포함(안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안 제28조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신변처리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4항)

특수교육법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소변 처리와 같은 신변처리 활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특수교육기관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이다. 이러한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만이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3)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다는 것

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특수교육대상자,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교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신변처리 활동에 할애하게 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인적 지원과 더불어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현실은 학교 등의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와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신변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4) 전공과 학생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24조 제5항) 및 고등교육 과정의 장애학생이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31조 제1항) 마련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을 뿐(제19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신변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5)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이,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특수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들과 직접 제공, 연계, 협력하는 최종 전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행동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특수교육원(안 제19조)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⁵⁾

6) 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변경(안 제27조 제1항)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마련(안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화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및 학생당 교원의 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55인) (의안번호 : 16631) 참조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의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9항)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법 관련서비스에 의료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교사 배치(안 제28조 제4항)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범조항에 따르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도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지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2004년 OECD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범주를 3단계로 범주화하였다. 1단계인 Category A 단계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지닌 학생이다. 2단계인 Category B 단계는 영재아동, 학습곤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3단계인 Category C 단계는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곤란이 있는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와같은 OECD의 포괄적인 특수교육대상의 범주는 1994년의 살라만카 선언문 및 행동을 위한 프레임 워크에서 제시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모든 아동, 특히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살라만카 선언문은 모두를 포함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학습을 지원하고,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기관인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를 향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특수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발제에서는 “모두를 위한 학교”가 실현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심층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와 교육권 확보 방안에 대해 학부모, 특수교사, 중증중복장애 청소년 당사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에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반구조화 질문을 구성하고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투렛장애 학부모 1명,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 1명, 중증중복장애 학부모 1명, 중증중복장애 청소년 1명,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이자 초등특수교사 1명, 대안교실 운영 경험이 있는 초등특수교사 1명, 중증중복장애 행동지원 경험이 있는 초등특수교사 1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통된 경험과 견해를 이해하고 교육 및 복지 관련 욕구, 정책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 소외 문제

첫째,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 일차적인 문제는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재심사 청구에서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일반 교육과정의)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고양, 경남 진주, 경기 남양주 사례처럼 지역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이다.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래와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소아 우울증까지 와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을 볼 때 틱으로 인해 평가조정이 필요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는 중증천식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모든 교실에 공기 순환 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되었다.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은 원격 수업을 듣고 출석 인정을 받고 있으나 평가는 일반학급의 수업 내용을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원격수업과 일반학급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응급 상황발생 시 학교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장은 수학여행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중증 식품 알레르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인식이 낮아서 교육 현장에서는 두드러기 정도의 경증이라고 보는 것을 경험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대소변 교육이나 급식 교육 등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나 특수교육실무사가 1:1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인력 부족과 장애유형이 다양하다보니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맞는 일도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부담돼서 학교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이 물건을 던지고 욕하는 행동 등을 할 때 학교에서 마땅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동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특수교사가 행동지원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는 중증중복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나서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보다 학습장애로 선정 받는 데 기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면 학습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계선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금의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에 있는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

첫째,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행동장애 유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기타 건강장애로 분류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투렛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초에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투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시험을 볼 때 별도로 공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때는 유예기간을 6개월 ~ 1년 정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건강건강장애 학생의 정의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증의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도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낮은 인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향후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 지원도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에 의료 전문인력 지원과 대체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대체식 지원과 응급주사 등의 의료적 지원 또는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행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통합학급에서 분리조치 할 때 미세하게 특수학급으로 책임이 전가되면서 특수교사가 전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 행동지원을 위해서 행동중재 전문가나 특수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중증중

복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1.5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와 의료적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고 1박 이상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비용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이 고등학교나 전공과 졸업 이후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에는 불일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정 시기를 놓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계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대안 교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면 대안 교실에 유연하게 다니면서 통합교육적이고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대안 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학급으로 명시하고 전담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

가. 특수교육법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의 명시화 및 확대(안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할 필요가 있다. 투렛장애를 가진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서·행동장애에 “투렛장애 등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5항에 투렛장애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함께 개정해야 위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⁶⁾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 ‘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 ‘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령기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등록 장애인으로서의 투렛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렛장애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정서·행동장애에 해당된다고 진단·평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따라서 투렛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 의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를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참고하여 학령기인 “만 6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ctic shock, 과민성 쇼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

6) [시행 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식품 알레르기를 건강장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특수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포함(안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안 제28조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신변처리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4항)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법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소변 처리와 같은 신변처리 활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특수교육기관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최은원 외, 2022)이다. 이러한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만이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희 외, 2023).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교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신변처리 활동에 할애하게 되므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인적 지원과 더불어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공과 학생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24조 제5항) 및 고등교육 과정의 장애학생이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받을 수 있는 근거(안 제31조 제1항)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을 뿐(제19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 과정에 있

는 장애학생은 신변처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섯째,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이 필요하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이,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특수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들과 직접 제공, 연계, 협력하는 최종 전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행동지원·체험 등과 같은 교육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특수교육원(안 제19조)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⁷⁾

여섯째, 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변경(안 제27조 제1항)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마련(안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화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 및 학생당 교원의 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의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28조 제9항)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법 관련서비스에 의료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첫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교사 배치(안 제28조 제4항)가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법조항에 따르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도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지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학급의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55인) (의안번호 : 16631) 참조

2. 제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교육적 지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OECD의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진단 및 평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발의 및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 중증중복장애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앞으로 다양한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넷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및 지원하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및 특수교육지원인력 간에 협력적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 교육기본법. 법률 제 18456호.
- 교육부(2020). 2020, 2021, 2022,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저자.
-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통계. 세종: 저자.
- 교육부(2022a).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세종: 저자.
- 국가인권위원회(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국립특수교육원(2022).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충남: 아산.
- 국립특수교육원(2020).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충남: 아산.
- 기초학력보장법. 법률 제 18458호.
-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34-261.
- 김정연(2021). 건강장애 학생 교육. 학지사: 서울.
- 병원학교. <https://hospital.s4u.kr/main.do>, 한국교육개발원
- 세종특별자치교육청(2022). 세종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세종: 저자.
- 이대식 (2019). 학습 어려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국내 학습장애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 학습장애연구, 16(1), 1-32.
- 이소현, 박은혜(2024).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서울.
- 이예다나, 손승현 (2021). 학습장애 진단 및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의 전문성과 지원 요구 분석. 학습장애연구, 18(1), 45-65.
- 엄선희(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의 교육권”, 2022 하반기 KoDDISSUE,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1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 20351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55인). 의안번호 16631.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42호.
- 장윤용, 강성리, 엄선희, 원영미(2023).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서울: 장애인교육아올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 19740호.
- 최은원, 원영미, 이수연, 이주연(2022).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연구, 114-121. 서울: 장애인교육아올다.
- 한경근, 김원호, 황인영(2020). 중도중복장애 학생 현황 분석 및 유형별 지원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 한경근(2019).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쟁점 및 지원방안.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5. 29 서울시의회.
- 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
- Krueger, R. A., & Casey, M. A. (2014). 포커스그룹 응용조사 실행방법. (민병오, 조대현 역), 서울: 명인문화사. (원본발간일 2008년).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 Tara Murphy(2021). 틱 : 부모와 전문가를 위한 가이드 (심미경 역), 서울: 박영스토리. (원본발간일 2017년).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OCR. Protec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ction 504.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504faq.html>.

Ⅵ. 의견 수렴

김수연(한국뚜렛병협회 회장)

1. 들어가며

우리 “한국뚜렛병협회”는 뚜렛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신장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뚜렛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뚜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다양한 음성틱과 행동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입니다. 틱(Tic)은 목적없이 특정 움직임이나 소리를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하는 증상입니다. 뚜렛장애는 주 증상인 틱 이외에도 ADHD, 강박장애, 학습장애, 불안, 우울, 언어와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발달적 어려움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학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증폭됩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권 소외 문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소망하며, 한국뚜렛병협회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 관련 법 개정 초안 개발에 대한 의견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안

○ 장애인 등록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6세로의 개정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뚜렛장애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인정받는 장애입니다. 그러나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인만 해당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어야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뚜렛장애로 인해 심한 생활의 제약 및 기능저하를 겪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2022)에 의하면 전체 뚜렛장애 환자의 82.5%가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입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군들을 제외하였기에 약 1만여명의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교육아올다 연구에서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를 학령기인 “만 6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합당한 권고입니다. 만 20세 이전의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갖 증상에 시달리며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조기중재 및 예방을 위해 만 6세부터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험부족으로 인한 지적장애 등 2차적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 6세 시점에서 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를 확인함으로써 과잉장애진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장애인 등록 신

청에 연령제한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심사평가원, 2022]

2)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의 명시화 및 확대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를 명시화 및 확대 방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뚜렛장애는 2021년에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로 편입되었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였기에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외에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 및 사회전반에서 뚜렛장애가 법적 장애로 인정되는 만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다는 사실에 무지한 경우도 있다는 것에 특히 동의합니다. 신문고 문의를 통해 뚜렛장애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뚜렛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에 뚜렛장애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에 “뚜렛장애 등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뚜렛장애를 명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특수교육 환경에서는 “기타 건강장애” 부분에 뚜렛장애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뚜렛장애의 분류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별학급의 설치 및 인력 배치안

-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학급의 설치 및 인력 배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뚜렛장애인들은 대개 초·중·고 학생일 때 증상의 악화기를 겪습니다. 악화기의 행동틱은 장애 당사자의 근육 및 관절을 손상시켜 2차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음틱이나 고퇴틱, 외설틱 등 음성틱은 그 특성상 교사, 동급생 등 학급에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틱 증상이 상승할 때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공간’, 틱이 잠잠해지기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은 틱 상승기를 겪을 때 ‘보건실’, ‘상담실’, ‘교무실’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불가능하면 조퇴를 하거나 아예 결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석이 지속되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졸업 및 진학을 못하는 학업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따라서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틱이 안정되면 다시 교실 수업에 복귀할 수 있는 공간, 즉 특별학급이 필요합니다. 특별학급은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로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학급의 설치에 뚜렛장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교사, 동급생 등 모든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존중하고 보호할 유일한 조치일 것입니다.

3.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기타 제안

1) 뚜렛장애의 이해 교육 필요

뚜렛장애의 외현적 대표증상은 행동틱과 음성틱입니다. 반경이 큰 행동틱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초고음이거나 고품소리 수준의 음성틱은 면학분위기를 해칩니다. 욕설틱이나 외설틱과 같은 비사회적인 음성틱은 교사나 동급생에게 큰 부담감과 당혹감을 주어 학급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칫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ADHD 등 동반 질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설명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또래의 놀림과 괴롭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틱 증상에 낯선 교사에게 징계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뚜렛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뚜렛장애의 이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차원의 뚜렛장애 이해교육은 뚜렛장애 당사자의 인권 존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정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교육공동체로서 기능하게 하고, 타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케 할 것입니다.

2) 뚜렛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적절한 선정기준의 마련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특수교육적 필요와 요구가 있음에도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희귀합니다. 뚜렛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에 해당하는데, 정서·행동장애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 가.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나.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다.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바.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틱 증상은 정서·행동장애 가, 나, 다, 라, 마 항목에 단일하게 들어맞지 않고, 틱 외에 동반질환이 있다면 여러 항목의 특성을 중첩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행동장애의 선정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진단·평가 영역	정서·행동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로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네 가지 평가도구만으로는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타당한 검사들을 사용하고, 의사나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보다 명확하게 진단하는데 예일 틱 증상 평가척도(YGTSS)가 있습니다. 예일 틱 증상 평가척도(YGTSS)는 틱의 개수, 빈도, 심한 정도, 복합성, 방해의 5가지 차원을 평가하여 뚜렛장애인의 장애 판정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뚜렛장애 자체가 그 특성이 복잡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되는 시점이나 진단·평가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절한 선정기준 및 진단준거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3)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을 통한 출석인정제도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은 악화기에 극심한 틱 증상으로 조퇴 및 결석이 잦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결손과 학력저하가 발생하고,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학 및 졸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뚜렛장애의 특성은 틱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심한 강도와 빈도로 나타날지 알 수 없기에 조퇴 및 결석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출석인정제도는 운영하되,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퇴 및 결석이 일시적인 경우 가정학습이나 학교별 자체 보충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출석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조퇴 및 결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증상의 강도나 빈도에 따라 실시간 화상수업이나 녹화수업을 선택 이수하여 출석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유급위기에 있는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뚜렛장애는 초기 발병기인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성인 초기까지 가장 심한 악화기를 겪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교육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뚜렛장애가 성인기 즈음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뚜렛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교육권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이 상당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틱이나 간헐적인 틱, 강도나 빈도가 약한 증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뚜렛장애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연한 교육권을 누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뚜렛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교육적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장애인으로서 복지가 제공된다면,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을 모은 법률 개정안 자료와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애인교육아울다”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세라(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학부모)

1. 건강장애학생과 식품알레르기학생의 현황

1) 건강장애학생 현황

특수교육통계⁸⁾에 따르면, 2024년도에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1,979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7%이고, 건강장애 학생의 초등학생은 753명(38%), 중학생 517명(26%), 고등학생은 591명(30%)입니다. 그중 1,867명 94%의 학생이 일반학교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장애 학생의 대부분(99.6%)은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특수교육대상자인 건강장애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은 소아암, 소아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이 곤란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특별한 교육이 요구됩니다.⁹⁾

2) 식품알레르기학생 현황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서울 관내에는 총 1,303곳의 학교에서 총 40,756명의 학생들이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¹⁰⁾ 또,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매년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300,836명의 학생 중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14,343명, 총학생수의 4.77%이고,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중증 식품알레르기 학생은 418명, 식품알레르기 학생의 2.9%, 총 학생수로는 0.14%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¹¹⁾. 시 교육청이 실시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2018년 3.1%에서 2022년 4.50%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¹²⁾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없으며 현황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 학부모는 영양교사에게 학년초에 실시하는 식품알레르기 조사가 교육청에 집계가 되는지 물었더니 지원청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식품군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 **전국적인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통계.

9) 박인숙(2020).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복귀 지원 모형 개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10) 디지털광진(2023.9.13.). 김혜영 의원, “식품알레르기 학생에게 대체식단 제공해야”. <<http://m.gwangjin.com/23435>> (최종접속일: 2024.09.09.)

11) 남현진(2022). 부산지역 아동·청소년의 식품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연구: 2020년도 식품알레르기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12) 황두열(2023.5.26.). 부산교육청, 식품알레르기 학생 체계적 관리.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2611543632132>> (최종접속일: 2024.09.09.)

2. 건강장애학생과 식품알레르기학생의 교육적 지원의 문제점

1)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의 문제

(1) 건강장애 정의, 선정과 배치의 문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2항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선례의 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 건강장애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부모들로부터 얻고 있음. 선정과 배치, 지원과 재배치 심의 내용과 과정에 학부모의 의견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와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2) 학교복귀프로그램 부재하거나 부실한 운영

- 2024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과 사회적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학교복귀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별로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 격차 최소화를 위한 필수로 운영되어야 한다.”
- 건강장애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음.
- 실제로 반 친구들에게 피자 돌리기나 문제집 사주기, 보드게임 사주기 등으로 학교복귀프로그램이 진행됨.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낮은 인식

- “아픈데 무슨 공부냐” “건강이나 신경써라”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낮은 인식을 드러냄.
- 교육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IEP(개별화교육계획)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 건강장애학생들은 체육, 실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제한되고 배제되고 있음. 유급이나 자퇴 권유를 받기도 함.
- 원격학교의 교직원과 교사들은 건강장애학생들을 원격수업학교의 위탁학생으로 인식하면서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소통을 소홀히 함. 실제로 원격수업학교의 입교의 행정처리의 마감날짜를 넘겨 3월 한달을 통째로 결석으로 처리될 뻔한 일도 있음.
- 모든 평가나 팀 프로젝트는 학교 수업에 기반함으로 인해 건강장애 학생들은 공평한 기회를 얻기가 힘들.
- 학부모들은 장기적인 돌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원격수업이 원격학교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업 외의 교육활동, 특히 현장체험학습이나 평가 때는 학부모의 행정 부담이 가중됨.

(4) 의료적 지원 부재와 미비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

미제공)에서는 의료적 지원이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측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부모로부터의 각서를 요구하고, 보조인력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5) 건강장애학생 평가의 문제

- 건강장애학생은 원적학교와 원격수업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평가는 원적학교의 수업한 내용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 건강장애학생들의 성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의 건강상의 특수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 건강장애학생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수행평가 준비와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모든 평가의 원칙을 반드시 원적학교에 출석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험장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시험 당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 건강 상태가 수시로 변하는 건강장애학생에게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2) 식품알레르기학생의 교육적 지원 문제

(1) 시스템 부재

- 식품알레르기 학부모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학교에 연락해 알레르기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관·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한 학부모는 “매일 아침마다 매번 전화드리는 게 좀 불편하신듯 보여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계속 전화 드리려고요”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함.
- 학교 교직원에 따라 대응 방식과 반응이 일관되지 않음.
-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매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함.

(2) 가족과 당사자에게 전가된 책임

- 학부모는 아이들의 음식, 위급 상황 대처, 상비약 등 모든 사항을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함.
- 학부모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 종합병원 근처로 이사. 아이들이 기관이나 학교에 있는 시간에도 항상 불안과 초조함을 갖고 주변에 머물러야 함.
- 학부모들은 경제적·환경적·정신적·심적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

(3) 교육활동에서 제한되거나 배제

-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은 수련회나 수학여행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활동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배제됨.
- 교육 현장은 식품알레르기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4) 대체식 미제공 및 부실한 급식 제공

- 대체식과 제거식 제공을 거부되거나, 제공된 대체식이 김, 간장, 맨밥과 같이 영양적으로 매우 부실하게

제공됨. 도시락을 싸가더라도 안전한 장소 제공을 하지 않아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는 경우도 있었음.

- 급식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미표기 또는 부정확한 표기로 인해 식품알레르기 학생들이 급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함.
- 식품알레르기 학생들은 대체식과 제거식 제공의 부재로 인해 부실한 식사를 하게 되며, 알레르기 항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급식 때문에 위험한 음식에 노출될 가능성.

(5)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낮은 인식

- 일부 교직원은 식품알레르기 반응을 단순한 두드러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식품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유난하다”거나 “예민하다”, “편식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경우도 있음.
- 학생이 집에 돌아와 밥 한 끼조차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거나, 혼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는 등의 고충이 있음. **결국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발생함.**

(6) 응급상황 등 의료적 체계와 지원의 부재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1항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주사 투여가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과 학교에서는 투여의 조건으로 학부모의 각서를 요구함.

3. 건강장애학생 및 식품알레르기 학생의 교육권 확보 방안

1) 건강장애 학생 지원

- (1) 건강장애 폭넓게 인정하고 해석
- (2) 건강장애 정보와 선정.배치.지원에 대한 절차 매뉴얼 마련
- (3) 교사 및 교직원의 건강장애 교육 및 연수
- (4) 학교복귀프로그램의 전수조사 및 실효성 있는 운영
- (5) 의료적 지원 체계 마련
- (6) 평가 조정과 평가 수정 및 대안책 마련

2) 중증 식품알레르기 학생 지원

- (1) 식품알레르기 학생의 현황 파악
- (2) 교육적.의료적 지원 체계와 시스템 마련
- (3) 학생 및 교직원의 식품알레르기 교육 및 연수
- (4) 급식대책 마련
- (5) 알레르기 성분 표시제 개선 및 강화
- (6) 건강장애 영역으로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고지영(대안교실운영협의회, 대안교실 담당 전문상담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보편적 권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유독 높은 장벽으로 선정에서 교육적 혜택까지가 너무나도 험난한 것이 교육적 현실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는 투렛장애, 식품 알레르기, 경계선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진 다양성으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IQ가 70~85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 학습장애 학생들은 또래 학생들에 비해 1~2년 이상의 학습 부진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현저히 낮은 학습력을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계도 보지 못하고, 구구단도 외울 수 없는 학습 부진 속에서 50분이 라는 수업 시간을 하루에 7교시까지 견뎌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란 과연 어떤 곳일까? 2~3교시는 엎드려 자고, 눈치껏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멍 때려도 보지만, 그들에게 하루는 너무나 길고 지루할 것이다. 경계선 지능의 경우 경계선 학습장애를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장벽이 높아 선정되기 어려움이 많으며, 이렇게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생 저학년을 거쳐 중·고등학생으로 진학을 하면서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무기력으로 인한 우울감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무단 결석, 무단 조퇴라는 학교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며 학생들은 결국에는 자퇴와 같은 학업중단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경계선 학습 장애는 30명 학급당 2~3명이 될 정도로 지적 장애수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은 학교 내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이 아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회화 작업을 적절하게 배우면서,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학생수에 비해 지원 할 수 있는 대안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안학교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이라 일컫는 대안교실이 도입되었다.

대안교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 경계선 학습 장애,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 무기력이 심한 학생, 사회성 부족이나, 불안으로 인해 학급 내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학급이다.

학교 급간, 각 학교 특성에 따라 대안교실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사회성 발달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생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초기 대안교실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필요한가? 이들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대안교실이 운영되면서 이루어내고 있는 성과에 이제는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교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이 교육적 소외대상인 경계선 학습 장애나, 투렛장애, 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지만 특수학급 부족으로 인해 통합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일반 학급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큰 업무임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상담사로서 대안교실을 10년이상 운영하면서 매회 운영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사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 고민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에 대한 피로도도 인해 정작 상담 업무를 열외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다음 해에 이를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끝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밝아진 학생들을 보며, 대안교실 신청이라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및 교사가 배치되어야함은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법조항에 구체적이지 않아 어디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특별 학급의 설치 및 운영, 예산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두어 학업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교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나 선의가 아니라, 법제화되어 전담교사를 별도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형식적인 체험 학습이나, 시간 때우기 위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특성과 어떤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재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간 협력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적 소외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진정한 교육적 복지일 것이다.

[대안교실 참고자료]

■ 대안교실의 정의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으로 운영됨.

■ 대안교실의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예방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적용
- 학생의 개성 성장과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부적응의 최소화

■ 대안교실 대상 학생

-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
- 무단결석, 무단조퇴 등 학교 출결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
- 학습 무기력,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우울, 불안, 경계선 학습 장애, 뚜렛 장애 등)으로 교실 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
-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 교육적 사각지대의 있는 통합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경계선 학습 장애, 뚜렛 장애,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방침

- 교육과정의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 편성, 일반 교실과 병행하여 운영함
- 반일제: 오전, 오후에 대안교실 운영
- 요일선택제: 주중 요일을 정하여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 기수제: 일정기간(4월 ~ 5월, 6월 ~ 7월)을 정하여 기수별로 운영
- 전일제: 교육과정 전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 편성·운영

■ 대안교실 기대 효과

-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학생 지도를 통한 행복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학생·학부모·교사가 원하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향상
- 위기 학생의 추수 지도 등 위기 학생의 교육의 질 관리 기반 구축
- 학생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해소
- 정규 교육 과정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실 운영 애로사항

- 대안교실 전담 교사의 부재로 인한 대안교실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화
- 대안교실 이용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통한 유연한 통합 교육의 필요성
-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한계

■ 대안교실 개선점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적 근거의 필요성
- 대안교실 전담교사를 별도 정원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대안교실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
-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및 특수교육인력 간 협력적 지원의 강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본질에 의거한 교육권 회복과 확보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1. 서론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는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통합되는데 기여하는 것이 특수교육법의 목적인 셈입니다. 저는 특수교사로서 이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장애 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2조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에 관련서비스까지 더해진 것이 곧 특수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선언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것이라 교육과정의 의의나 의미 자체를 선언한 법조문은 없습니다만,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이 세 가지가 크게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를 발전시

키고,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까지 실현하는 것이지요.

홀췌 커진 시야를 다시 좁혀 특수교육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로 이루어진 것이 특수교육이라고 한다면, 특수교육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 중 어느 한쪽이 간과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잘 아울러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키우고, 관련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적 소외를 겪는 학생들이 특수교육의 의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수교사로서 큰 보람이겠습니다. 한편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다 덜 분절적이고 더 통합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 학교생활 및 개인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역시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문에서는 발제문에서 제시해주신 특수교육법을 비롯한 법 개정안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현장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특수교사는 일반학교 기준으로 학교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수교육법을 직접 실현하는 주체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 하나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법조문에 얽매어져 너무나 많은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며, 제안해 주신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본론

위에서 교육과 특수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의 근본적 취지에 따라, ‘교육’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역시 교육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변처리에 대한 교육적 제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전, 먼저 전반적으로 ‘신변처리’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신변처리는 개인 일상생활 전반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양말 등을 입고 벗는 착탈의, 손 씻기, 이 닦기, 세수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등의 위생관리, 배변이나 배뇨 같은 배변활동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내용입니다. 이 중 학교의 몫을 재정의하여야 하며, 이때는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은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모든 행동은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교사가 학생의 화장실 사용을 지도하거나 지원인력에게 화장실 사용 보조를 지시할 경우, 이

행동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배변 패턴과 기저귀 건조시간을 체크하고, 건조시간이 적정 기준인 2시간 가량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환경 구성을 검토하는 등 선결조건을 체크하고 이 학생이 배변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일이 교육적인 배변활동 지도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저귀가 젖었을 때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시켜주기도 하고, 대신 씻겨주는 게 아니라 물티슈나 비데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어쩌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훈련된 직종입니다.

신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이 어려움이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는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이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의미의 교육보다는 종합적 보육에 가까운 늘봄 학교가 교사 업무 완전 배제를 천명한 것 역시 같은 선상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간 무분별하게 밀고 들어온 교육 외적 서비스가 공교육 현장을 오히려 침범하고 있는 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돌봄교실을 확충하기 위해 특수학급 증설을 거부하는 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사 업무배제를 약속했던 늘봄 역시 결국 결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늘봄교실을 확충하여야 하니 특수학급이 과밀인데도 증설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활동과 교육 외적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구분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처음 살펴본 신변처리의 목적에 따라, 교육적 목적이 포함된 교육활동과 학생의 일상생활활동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별개의 목적에 따라 별개의 방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에 의한 교육활동은 교사에 의해, 또는 교사의 지시를 받은 지원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 손 씻는 방법 또는 외투 입는 방법을 교수하기 위한 기능적 연습 기회 제공, 행동 형성을 위한 촉진 제공 등) 한편 개인 일상생활의 경우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별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교육부 소관의 법령보다는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자주 만나 안타까웠던 바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개인의 모든 삶 전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특수교육법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p>제2조(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2. ----- ----- ----- ----- -----지원인력배치 · 신변처리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비스는 지금도 교육현장에 많은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예) 치료지원: 업체에 대한 영수증 처리, 카드 발급과 관리, 일정 조율 및 장소 섭외 등 / 통학지원: 출석일수 계산을 통한 통학비 계산, 증빙자료 전산화, 지급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관리 등 / 지원인력: 채용, 복무, 관리, 교육, 급여 등 수많은 부차적 행정을 낳음
<p>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신 설></p>	<p>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학생을 포함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편의시설은 이미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음. 이를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또한 이 역시 교사(특수교사)의 행정업무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큼. (수업시간에 줄자와 각도기를 들고 다니고, 수업 중에 편도 2시간 거리의 행정출장을 가야 했던 특수교사의 사례) → 먼저 행정업무의 선을 명확히 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학교 내 또다른 소수자인 특수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책무성이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교육 소외를 불러일으키게 됨</p>
<p><신 설></p>	<p>제11조의2(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각급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험·실습 등의 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자질 및 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특수교육원은 교육부 시책으로서도 발표된 바 있고, 시도별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교육을 지원한다는 원 취지가 원 취지가 이루어진다면 환영할 만한 긍정적 내용 - 그러나 이미 있는 시도 중 일부는 단지 행정업무를 서로 떠넘기며 결과적으로 현장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행정 이원

특수교육법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p>성 향상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도 특수교육원은 고등학교 과정(전공과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한다.</p>	<p>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5. 정서·행동장애 9. 건강장애</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5. 정서·행동장애(투렛장애 등을 포함한다) 9. 건강장애(식품 알레르기 등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렛장애, 알레르기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의 위상에 알맞지 않음 - 예) 지적장애는 하위 염색체증후군 등을 법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으며, 자폐성장애 역시 DSM상 하위 체계들을 법에 나열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선정배치 자체는 교육장/감의 권한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는 것이나, 정히 법령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시행령 내의 별표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음 - 특운위의 심사 기준 구체화는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요구사항이며, 이는 법보다는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국립특수교육원 또는 교육부 등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p>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p>	<p>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영아2, 유치원3, 초등4, 중학교4, 고등학교5, 전공과 고등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기준 없이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영아학급 기준 신설 매우 긍정적 - 학급 당 학생 수 축소도 반드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과제
<p><신 설></p>	<p>제27조의2(특수학교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항, 2항은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법

특수교육법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p>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p> <p>①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인으로 한다.</p> <p>②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p> <p>③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특수교육교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 위계로 상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해당 의의에 대해서 공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항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한 학교에 한두 명이 대부분인 특수교사의 여건으로 보결수업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끝에 현재 시도별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운용 중인 교육청들이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 - 다만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어떤 준위에서의 배치인지 명확히 해야 함. 정규교원은 단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더 큰 범위이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오히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큼
<p>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p> <p>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p>	<p>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p> <p>③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지원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지원인력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항: 지원인력 배치 결정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권한으로 설정한 것 긍정적.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학생의 자립도 향상 등에 알맞게 제공 및 활용 가능 - 4항: 3항과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 의아. 이는 31조의 대학 내 편의 제공과도 연결되는데, 기존 지원인력의 역할에서 신변처리를 또 별도로

특수교육법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p>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정에 따라 지원인력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변처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및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분리하겠다는 의도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함인지 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은 이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로서 신변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분리하는 이유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며, 이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지원인력의 ‘신변처리 업무 거부’ 등의 해태가 강해질 우려가 있음을 알림

초·중등교육법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p>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p> <p>④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p>특별학급이 법제화된다면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학생 등을 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교사 수급, 교실 확보 등의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과 병행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틀어 모두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p>

3. 결론

발제문을 보며 교사로서 마음이 아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법을 실현하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특수교사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소관 주체는 대부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지만, 교육감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교사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는 결국 특수교사 한 명이 되는 것이지요.

특수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에서 만나면 더 잘 지도해줄 수 있을텐데. 발제문에서 말했던 경계성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더 적합하게 수정된 교수를 통해서 이 학생을 더 잘 이해시키고 적응시켜줄 수 있는데, 개별화된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아이들일텐데.

한편으로는 특수교육으로 해결해주기 어려운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음이 정말 아프고 막막했습니다. 심리정서 위기를 가진 학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특수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외적, 의료적 접근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이 함께 끙끙 앓고 괴로워만 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 무력하고 속상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해서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도록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고 물었을 때,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이라고 답합니다. 교육 외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의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학교나 교육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이 함께 힘을 합할 때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학생의 삶은 장애와 비장애에 상관 없이 자립적이고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 길에서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힘껏 다하고 싶습니다.

김라경(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제자료 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서비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1)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한 11개의 유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도 포함되지 못하며 2)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적절한 교육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너무 심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안되고, 의학적 진단에 국한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장애의 언저리쯤에 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의 장애가 너무 심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을 만큼의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좀 덜 특수한 계층,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효율적인 구성원에게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을 ‘특수교육법’의 엄격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들이 교육 소외 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특수교육대상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제한된 인력과 서비스로 교육 소외가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 중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제한적이며 불균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 학생들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2024년 전에는 학교 내 의료행위,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등에 대한 관련 법령(예: 의료법, 특수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이 미비한 상황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학습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2019년부터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병원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일부 학교에 국한된 지역 조건에 특화된 모형으로 보편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인지하고 본 토론자도 작년에는 공동연구자로 교육부의 ‘중도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14개의 시·도 교육청과 함께 3개의 의료적 지원모형을 구축하였다. 올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정을 통해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토론자와 연구팀은 학교내 의료적 지원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의료인(예, 간호사)으로부터 학교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의 해당 범위는 여전히 아쉽다.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가 상시 필요한 학생 또는 기관절개관,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탈되어도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일단 4개의 유형에 제한된다.**

현재는 “의료기기를 의존” 하는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시작 및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한 학습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기관절개관을 부착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닌** 경우는 지원의 범위가 아니다. 일반학급에는 기관절개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가지도 못한다. 또한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으나 위투관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특수교사, 보호자, 활동지원사가 학교 내에 힘겹게 직접 처치를 하거나 재택 순회교육을 받는다.

본 토론자는 재택 순회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택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교육성과의 여부는 학부모와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대상학생의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통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이 큰 집단이다. 외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수업시간이나 시수는 학생의 요구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유동적인 시간표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학교내 간호사 지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적 처치 및 의사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의 건강 및 의료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학교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누가 간호사를 고용하는가에 대한 채용 문제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대부분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채용된 간호사 역시 임상적, 법

적, 재정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의료지원 활동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이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동일하게 간호면허가 있는 보건교사와 의료지원 간호사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갈등 또는 업무 협조의 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처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파견된 간호사의 경우에 석션, 도뇨관, 위루관을 통한 경관 영양 학생들만이 의료적 지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로 놓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요 확대를 고려한 적정 인력 확보와 역할 분장이 필요하며 그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던 중증장애학생들의 잠재수요와 이에 따른 대상자의 확대를 고려할 때, 적정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이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생의 생활연령이 증가된다고 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적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4, 6, 6, 7의 숫자로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원의 정도의 요구에 맞춰 교사의 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한다.

제2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방안>

I.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위기 상황 중심으로 -

조성연(장애인교육아울다 전문위원, 초등특수교사)

1.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의 중도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사례

<미생(未生) 특수교육편>

1) 첫인상

본교는 면단위 지역의 전교생 5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이다. 2022년 2월 본교에 부임에 처음 학교에 출근을 했을 때 첫 인상이 강렬했던 기억이 난다. 지역사회의 소규모 학교이기에 근무 조건이 녹록치 않으리라 예상 했지만 미리 떠올려보았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던 것이다. 쓰레기통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비인권적인 열악한 교실 조건에다가 엄연히 다른 학교인 분교 학생까지 겸임 발령 없이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가르치지도 않는 다른 학교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주고 모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업무 시스템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인지 의아했고, 긴 시간 관련자들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유지되었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상상하기 어려웠다.



<자료1> 특수학급 교실 모습

	출근시	60°C 최고 설정 난방 후
2/25	10:10 6°C	15:00 10°C
2/28	11:20 9°C	13:30 11°C (실외10°C) 14:40 14°C
3/2	8:30 8°C	11:30 16°C 13:30 18°C 15:30 20°C 16:50 21°C

<자료2> 교실 난방 온도 기록

- * 공간의 첫인상
- 병설 유치원 뒷 공간을 잘라서 만든 교내 유일한 북향 교실,
- 법적 완화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36㎡ 교실에 낙후된 시설
- 그 안에 쓸모 없는 물건들만 잔뜩 쌓여있던 교실
- * 업무의 첫인상
- 분교 학생 검입 문제

검입 업무를 바로잡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었지만 교실을 옮기는 과정부터는 순탄치 않았다. 분명한 법적 기준이 있고 학교 여건은 여유롭지 않았어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감과 몇 교원의 지지 외에는 학교장의 반대가 있었고, 교육청을 비롯해 학부모의 무관심 속에 특수교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여러 차례 학교장과 교직원을 설득하고,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은 나에게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단단한지, 지역사회의 고여 있는 사고방식과 분위기,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 공기처럼 촘촘히 채워져 있는 사고방식과 감정은 무엇인지,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사회의 진짜 시스템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경험이었다.

2) 사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공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닌 2022년에서 2024년까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먼저 언급한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지루하고 소모적인 과정이다.(아직도 진행 중이라 완료형을 쓸 수 없다.) 그러면서도 **통합교육의 걸림돌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다 알고 한번쯤 겪어 보았을 만큼 일반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사회 소규모 학교이기에 또 중증장애학생의 사례이기에 조금 더 극적으로 강조되어 드러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뻘한 이야기를 굳이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장애학생의 행동문제와 관련해 행동중재(긍정적 행동중재) 정책이 점차 강조되고 시점, 교권 보호와 관련한 변화가 있는 시점에 통합교육의 현장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모든 사례는 고유한 조건을 가진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일 뿐 일반화할 수 없는 점도 잘 살펴야 한다.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서 말한 각각의 변수들의 역동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보해 가야 하는지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까지 통합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2022~24학년도 학교현황

2022년 주요 시설 현황

구분	교지(㎡)						교사					
	계	대지	연면적	운동장	교장실	교무실	교실	도서실	영어교실	특별교실	컴퓨터실	과학실
수량	11,739	4,250	2,056	8,438	0.5	1	6	1	1	1	1	1
구분	교사						부속건물				향교	유류저장고
	다목적실	형형실	특수반	보건실	유치원	사택	근식소	식당	화장실			
수량	1	0.5	0.5	0.5	1	4	1	1	4	2	1	
구분	교지(㎡)						계	특수학급	유치원	총계		
	1	2	3	4	5	6						
남(명)	0	5	3	4	3(1)	1	18(1)	1	5	21		
여(명)	5(1)	2	4	5	1	5	23(1)	0	9	31		
계(명)	5(1)	7	7	9	4(1)	6	39(2)	1	14	52		

본교 영어교실은 순회 영어회화 전담강사가 수업 시 사용하던 교실로 주중 월, 화 이틀만 사용하던 교실이었다.
 특수학급 교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 중에 반대했던 논리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자료3> 2022~ 2024학년도 학교 현황

3) 2022년, 통합교육 시수를 증가 확보하려던 과정 중의 갈등

본교 사례의 주요 인물로 살펴볼 학생은 2024년 현재 5학년 학생이다. 이 학생은 중증지적장애에 근이영양증으로 인해 운동과 이동에 제한이 많은 학생으로 사실상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다. 게다가 학생의 부모님 모두 지적장애인이며 함께 거주하는 비장애인 조모의 돌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이다.

2022학년도 특수학급 현황

1. 학년 실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	1	2	-	1	1	6
여	-	-	-	-	1	-	1
계	-	1	2	-	2	1	7

대부분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이거나 지적장애 부모를 가진 가정의 학생들로 학교에서 가정을 지원하는 부담을 저야하며 가정에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장애 유형별 실태

구분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계
학생 수	1	4	-	1	6

3. 학생 현황

순	학년	이름	성별	장애 영역	복지카드 유무	통합달입	방과후 학교	치료 지원	통학 지원	배치
1	2	윤**	남	뇌병변장애(1급)	○	신**	○	○	○	재택수업
2	3	심**	남	지적장애(중증)	○	유**	○	○	○	시간제
3	3	윤**	남	지적장애	○	유**	○	○	○	시간제
4	5	김**	남	지적장애(2급)	○	김*	○	○	○	시간제
5	5	이**	여	지적장애	○	김*	○	○	○	완전
6	6	윤**	남	의사소통장애	○	서**	○	○	○	완전

여기에 본교 학생 1명이 포함되어 총 7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

특수학급 학생은 3명으로 학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신청하지 않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료4> 2022학년도 특수학급 현황

학생이 1학년, 2학년이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시점인데, 소규모 지역 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정학습(꾸러미 수업)과 거리두기를 한 채 출석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교 상황도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 특수교사에게 인계 받은 이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통합학급 지원 시수가 4시간으로 학습 기술과 적응 행동이 매우 부족한 학생이라 해도 초등 저학년의 평균적인 상황에 비해(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인 통합교육을 제공받았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나 역시 아직 학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 학교 상황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 통합학급 담당 교사들의 통합교육 인식도를 고려해 통합교육을 내 기준에 맞춰 무턱대고 늘려 제안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2022학년도 1학기 처음 제안하여 운영된 통합교육 교과와 시수가 다음과 같다.

* 2022년 3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특수학급 지원	통합학급 지원
1학기	국, 사, 수, 과, 영 (17)	도, 음, 미, 체, 창체 (9)
2학기	국, 수, 영 (11)	사, 과, 도, 음, 미, 체, 창체 (15)

1학기 통합학급 기본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도덕	과학	과학	수학	수학
2교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사회
3교시	체육	체육	수학	체육	국어
4교시	국어	사회	국어	영어	국어
5교시	국어	음악	창체	미술	음악
6교시				미술	
7교시					

2학기 통합학급 기본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도덕	과학	과학	수학	수학
2교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사회
3교시	체육	체육	수학	체육	국어
4교시	국어	사회	국어	영어	국어
5교시	국어	음악	창체	미술	음악
6교시				미술	
7교시					

* 색칠된 부분이 특수학급지원

<자료5> 2022학년도 3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1학기에 수업을 해보니 내 예상대로 통합학급 시수가 너무 적다 느꼈다. 통합학급 교과와 시수를 정하는 일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인데(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 특성에 맞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내가 당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년: 아직 저학년이며 아직 통합교육을 기회를 더 제공받아야 할 시기
- 장애 정도: 중증장애학생이긴 하지만 처음 만났던 때보다 알아갈수록 통합교육을 이만큼 제한적인 정도의 최종중의 장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사회성 정도: 사회성 기술이 매우 부족하지만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비교적 온순한 모습일 때가 있다. 무엇보다 여럿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좋아하는 모습은 분명하다
- 도전적 행동: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학습 상황에 알맞지 않은 도전적 행동은 통합 환경과 특수학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같은 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와 폭력적인 행동, 수업방해 행동과 관련한 관계 역동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도 통합환경과 특수학급 동일하게 나타남(특수학급에서 집중적으로 행동 중재를 비롯한 학습 준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 조정이 필요함)
- 학습기술: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 학습기술보다는 학습 준비기술, 생활지도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
- 특수학급 지원 상황: 지원 정도가 포화상태임
- 통합학급 환경: 학급 친구들이 매우 온순하며 장애 학생에게 열린 태도를 보임. 인원이 적음

그러나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내가 고려된 상황과 이유에 일부 동의하지만 통합학급 시수를 1학기보다 더 늘릴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내게 주는 압박감도 매우 컸다.

2022학년도 1학기 특수학급 기본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36 ㄹ (과학)	56 ㄹ (국어) 36 ㄹ (과학)	56 ㄹ (국어) 36 ㄹ (수학), 36 ㄹ (수학)	36 ㄹ (수학), 36 ㄹ (수학)
2교시	36 ㄹ (영어) 56 ㄹ (국어)	36 ㄹ (수학), 36 ㄹ (수학)	56 ㄹ (국어/치료) 36 ㄹ (과학)	36 ㄹ (사회)	36 ㄹ (사회)
3교시			36 ㄹ (치료), 36 ㄹ (수학) 56 ㄹ (수학)	56 ㄹ (수학)	56 ㄹ (수학) 36 ㄹ (국어), 36 ㄹ (국어)
4교시	36 ㄹ (국어), 36 ㄹ (국어)	36 ㄹ (사회)	36 ㄹ (국어), 36 ㄹ (국어/치료)	36 ㄹ (영어)	36 ㄹ (국어), 36 ㄹ (국어)
5교시	36 ㄹ (국어), 36 ㄹ (국어)	56 ㄹ (수학)	56 ㄹ (치료)		56 ㄹ (국어)
6교시					56 ㄹ (국어)

- * 3G ㄹ: 국(5), 수(4), 사(3), 과(3), 영(2) = (17)
- * 3G ㄹ: 국(5), 수(4) = (9)
- * 5G ㄹ: 국(6), 수(4) = (10)

2022학년도 2학기 특수학급 기본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36 ㄹ (과학)	36 ㄹ (과학) 56 ㄹ (국어)	36 ㄹ (수학) 56 ㄹ (국어)	36 ㄹ (수학)
2교시	36 ㄹ (영어) 36 ㄹ (영어) 56 ㄹ (국어)	36 ㄹ (수학)	36 ㄹ (과학) 56 ㄹ (국어/치료)	36 ㄹ (사회)	36 ㄹ (사회)
3교시			36 ㄹ (수학/치료) 56 ㄹ (수학)	56 ㄹ (수학)	36 ㄹ (국어) 36 ㄹ (국어) 56 ㄹ (수학)
4교시	36 ㄹ (국어)	36 ㄹ (사회)	36 ㄹ (국어/치료)	36 ㄹ (영어) 36 ㄹ (영어)	36 ㄹ (국어)
5교시	36 ㄹ (국어)	56 ㄹ (수학)	56 ㄹ (치료)		56 ㄹ (국어)
6교시					56 ㄹ (국어)

- * 3G ㄹ: 국(5), 사(3), 영(2) = (10)
- * 3G ㄹ: 국(1), 수(4), 과(3), 영(2) = (10)
- * 5G ㄹ: 국(6), 수(4) = (10)

수업 중 학생들의 행동 문제가 많았던 시간을 빨간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자료6> 2022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특수학급 기본시간표

이 당시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다른 개별화교육위원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는데, 그 중에 통합교육의 당위성 논쟁과 함께 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도와 관련한 사항이 가장 첨예했고, 이걸을 좁히기가 어려웠다.

" 선생님 통합교육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 00이로 인해 피해 보는 학생들을 생각하셔야죠. 역차별입니다."
 " 00이를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권유할 수 없을까요?."
 " 00이가 극심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때 교사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되는 데 그런 때 **인권 침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저는 더 이상 아이를 지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은) 통합교육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 속에서도 결국 내가 제시한 시간표는 약간의 수정을 한 후 받아들여졌다. 2021학년도 통합지원 4시간이었던 것을 2022학년도 1학기 9시간, 2학기 15시간으로 늘렸으니 나름 선방(善防)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사실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가 필요할 상황일 때 교감선생님 및 특수교사의 심리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실제로는 특수교사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운영하게 됨)으로 통합교육시간을 증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두게 된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다 싶지만 당시 본교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혹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 목표행동: 기분이 나쁘거나 행동 교정을 위한 지시를 들을 때(교수학습과정의 배움 지도 포함)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가까운 양육자를 때리는 등의 공격행동이 있음. **도전적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행동,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 통합활동을 제공하도록 행동 중재 계획을 별도로 작성함. *** 위기행동 발생시: 교육활동 중 공동체 적응 및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적/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감정을 촉발하는 상황과 장소에서 벗어나 특수학급 및 별도 공간에서 심리지원 및 습을 제공한다.(교감 선생님의 협력 지도 포함)
----------------	---

<자료7> 개별화교육계획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요약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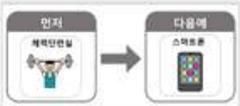
그리고 2학기부터는 교내에서 행동중재계획을 세워 운영하였고 통합학급 적응을 위해서 학생 행동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꼈다.

(2)학기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목표행동 선정 및 선정이유	
관찰되고 보고된 문제행동	① 소리를 지르는 행동 ② 욕설을 하는 행동 ③ 물건을 던지는 행동 ④ 가까운 양육자를 때리거나 공격하는 행동
목표행동의 조작적 정의	① 소리를 지르는 행동 ② 욕설을 하는 행동 ③ 허공이나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동 ④ 사람을 향해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동
증가해야 할 행동	① 자기의 마음을 간단한 언어나 부드러운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행동 (화 나거나 짜증날 때, 신날 때, 심심할 때, 요구할 때, 관심 받고 싶을 때 등) ②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놀이 행동 ③ 때와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행동
감소해야 할 행동	① 자기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 ②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확장시키는 행동 ③ 양육자와 긍정적 대화 및 타협을 회피하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행동
목표행동 선정이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힘,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성의 출발점이기에 매우 중요함.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비롯해 통합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음.

FBA에 근거한 도전적 행동의 기능에 대한 가설 설정	
가설 1	학생은 제시된 과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다.
가설 2	학생은 선호하는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다.
가설 3	학생은 자기 감정이나 요구를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편감이 느껴질 때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다.
가설 4	학생은 어린 시절 보고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정적 훈육/훈육의 부재(비일관적 훈육 경험)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다.
가설 5	신체적 불편감 및 피로감, 놀이의 부재 등의 긍정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도전적 행동을 할 것이다.

<자료8> 2학기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중 일부 1

선행사건 중재기법	
중재기법	중재방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시각지원 ▶ 시각스케줄 IF THEN 기법 ▶ 프리맥의 원리 ▶ FCT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불리는 그림카드나 사진카드를 활용 ▶ 시각스케줄 IF THEN 기법 (먼저 다음에 기법) <p>비선호일과 뒤의 활동은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을 자기주도로 선택하도록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맥의 원리로 비선호활동 후 선호활동 제시하는 훈련 진행. 시각적 지원으로 모래시계나 알람시계를 활용하여 이 시간까지 학습활동을 잘 참으면 선호활동을 제시할 것을 시각적으로 명시 ▶ FCT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선호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놀이 활동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활동이 수반된 신체놀이를 통해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언어 자극을 제공할 산책, 간질이기, 요리하기, 병원 놀이, 스티커 붙이기, 반죽 놀이 등의 감각 놀이 활동으로 학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만하거나 공격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환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이거나 소리 및 신체적 자극이 큰 자극을 최대한 조정한다. <p>-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또래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돌봄을 함.</p>
후속사건 중재기법	
중재기법	중재방법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된 금지 사인 변별자극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일관된 방법으로 금지사인을 일치시켜 변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중재함 <p>- 손을 잡고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엄한 목소리로 "멈춰. 사과해. 미안해 라고 말해"를 반복해서 말함..</p> <p>- 멈춘 후에 꼭 안아주어 "잘했어. 사과해."라고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행동 차별강화 DRI <p>-산책하자. 퍼즐하자. 병원 놀이하자 하여 바로 전환하거나 주의를 돌려 참여했을 때 칭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행동 차별강화 DRA <p>-학생의 기분을 감지하여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미리 제공하여 말함. "아 기분이 나빠서 산책하고 싶구나. 산책하고 싶어? 하고 알아준 후 힘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말했을 때 칭찬함.</p>

<자료9> 2학기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중 일부 2

<2022학년도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 회의 협의록>

- 파견 활동지원사 지원으로 인해 통합학급, 특수학급 활동 지원이 조금 더 확보된 상황이지만 수업방해 행동으로 인해서 수업 활동에 지장이 상당히 있는 상황임. 파견 활동지원사의 지원과 함께 담임 교사 및 특수 교사의 협력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필요시 교감 선생님이 함께 협력 지도함.
- 교육활동 중 공동체 적응 및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적/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감정을 촉발하는 상황과 장소에서 벗어나 특수학급 및 별도 공간에서 긍정적 행동 지도 및 섬을 제공한다.(교감 선생님의 협력 지도 포함)
- 학생의 정서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통합 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자료10> 202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 회의 협의록

[redacted] (장애 학생) 활동지원사 구인
 근무장소: [redacted] 초등학교 + 가정지원
 근무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
 - 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
 - 평균 하루 6시간, 총 월 120 시간
 업무: 수업 활동 및 행동 지원, 돌봄 등
 자격요건: 온라인 연수 1주일 수강
 홍천군장애인부모회 10시간 실습
 운전가능, 차 있으신 분
 급여: 시간당 11,100원 + α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문의: 홍천군장애인부모회 [redacted]
 010-[redacted]
 [redacted] 특수교사 조성연
 010-[redacted]

<자료11> 장애학생 활동지원사 구인 전단지

통합학급 수업 지원을 위해 지원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본교는 전입 전년도 11월 무렵에 신청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신청하지 않아 배치 받지 못했다. 결국 가정과 학교의 허락을 받아 활동지원사를 특수교사가 직접 나서 구인하였고 학교와 가정에 파견 배치하여 활용하였다.(2022년도부터는 가정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수업방해행동 및 도전적 행동은 2학기에도 반복되기는 했으나 빈도나 강도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학기 중반까지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특수교사에게 심리 지원을 요청하는 일은 3~4번 정도 있었다. 그 외에도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서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예민한 사안이 없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맡은 부분을 나누어 감당하며 2학기를 보냈다.

4) 23년, 통합학급 수업 중 일어나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

2023학년도 학급현황

1. 학년 실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성별							
남	1	.	1	1	.	1	4
여	1	1
계	1	5

2. 장애 유형별 실태

구분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계
학생수	1	4	.	.	5

3. 학생 현황

순	학년	이름	성별	장애 영역	복지카드 유무	방과후 학교	치료 지원	동학비 지원	배치
1	1	김*	남	발달지체	X	○	○	○	시간제
2	3	윤**	남	뇌병변장애(1급)	○	○	○	○	재학순조
3	4	심**	남	지적장애(중중)	○	○	○	○	시간제
4	6	김**	남	지적장애(2급)	○	○	○	○	시간제
5	6	이**	여	지적장애	X	○	○	○	시간제

특수학급 학생 4명으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받았으나
3주 근무 후 무단결근, 사직함

<자료12> 2023학년도 학급 현황

* 2023년 4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특수학급 지원	통합학급 지원
1학기	국, 수, 사 (12)	영, 과, 도, 음, 미, 체, <u>창체</u> (14)
2학기	국, 수, 음 (12)	영, 과, 사, 도, 미, 체, <u>창체</u>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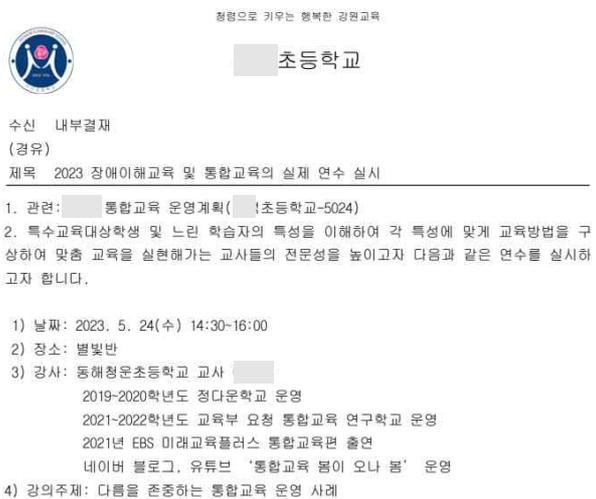
<자료14> 2023학년도 4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2022학년도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실과 통합교육 시수를 확보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일구어 내었지만 여전히 특수학급과 학생의 심리 정서적,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했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으로 느껴졌다. 2022년도를 돌아보며 2023학년도에는 통합학급 운영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위해 애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지점이 통합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역 사회 소규모 학교이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이 4학년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되었고 기대감 속에 출발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통합학급 적응기간이 끝나고 새 학기 1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해당 학생의 도전 행동이 지속, 심화되자 위기 행동 발생 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2023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사항)으로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5월 이후 학생 가정에 생긴 어려움으로 해당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행동 문제도 심해진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

며 결국 이 학생은 통합학급 수업 시작 20분 후, 10분 후, 5분 후… 때로는 들어가 자마자…도전적 행동이 심해져 매일, 거의 매 시간 특수학급으로 쫓겨와 특수학급 심리 지원을 받게 되었고 공식적인 배치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에 이르게 되었다. 2023년도에는 2022년과 다른 교감님이셨고, 개별 화교육지원팀의 장이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어려워 하셔서 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리고 이토록 무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디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관련한 연수도 통합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받고 교내에서 따로 기획하여 통합학급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연수도 5월 말에 실시하면서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개별적 감정, 담임교사로서 책임 의식을 느끼길 바랐다. 한편으로는 새로 채용된 특수교육 지도사에게 학생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인 모델링, 연수하며 통합학급 수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15> 2023년도 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 공문

행동문제가 많은 학생이지만 그 행동을 이해해 보고 통합학급에서 협력 지도할 방법을 찾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친절하신 선생님도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는 통합교육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였고, **특수교육 지도사에게도 단기간에 특수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행동중재 계획을 세워 학생이 행동이 변화하도록 하였지만 가정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조차 변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의 열심과 교사 개인의 인성, 특수교사와의 친분에 기대어 통합교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나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해당 장애 학생을 전일제 수준으로 특수학급에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요구는 점점 고착되었다.

그 해에 특수학급 업무 상황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건 마찬가지였다. 그 학생 말고도 입학한 1학년 학생의 지원 업무도 만만치 않았고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항상 “저는 00이 말고도 다른 학생의 지원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런 상황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교사보다는 더 장애 학생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 모든 상황이 버무려져서 나는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당 32시간 내외의 수업을 하며 업무 과중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느껴서 학기말 교육과정평가회에서 개별화교육에서 협의한 통합교육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 동안에는 통합학급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하며 통합학급에서의 수업곤란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에 특수교사가 아니라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때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반응을 잇을 수 없다.



“(분리 및 심리지원 업무) 그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서는 지금까지의 지원이 당연한 것이고 이 일을 특수교사의 고정적인 업무로 이해하고 있구나! 1학기 개별

화교육지원 협의 때도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수업이 어려울 때 학생 지도와 수업 지원을 돕겠다고 한 것이니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수교사의 업무가 포화되어 점심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상황과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니 반대의 입장을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한 주요 관련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그동안의 상황 속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갈등과 책임에 대한 불편한 심리가 그렇게 드러난 것은 아닐까 이해해 본다. 그리고 교감 역시 “개가 내 말을 듣겠어.” 발언하며 자신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절의 표현을 돌려 이야기하였다. 이 모든 상황이 사면초가로 느껴져 답답했었지만 현재 통합교육 지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맞다. 그 동안 거리를 두며 멀리해왔던 선생님에게 갑자기 그 학생이 순순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아이니까 그렇다지만 왜 어른이, 책임의 자리에 있는 어른은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할까 늘 의아하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관리자와 같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책임지게 할 것인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느낀다.

그리고 그동안 통합학급 수업에서 학생이 분리 조치되었을 때 지원해왔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엄밀하게 말했을 때 통합교육 현장에서 통합학급을 지원 업무도 특수교사의 업무이니 특수교사는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학생을 격렬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잠시 숨 돌리고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공간(별도의 심리지원 공간)과 이를 돕는 인력이 잘 협의되고 지원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 특수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희생하며 특수교사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 특수교사의 업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궁극적으로 결국 통합교육

의 주체성을 특수교사에게로 옮겨와 분리 교육을 촉진할 뿐 통합교육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한 때도 많았다. 그럴 땐 명확한 업무 분담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5) 도전적 행동 지도를 위한 협력체제 만들기 과정- 통합교육 컨설팅 실시

작년 8월에는 교권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준비하는 시점이었고 교권 보호,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자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를 근거로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겠다 싶어 기회를 만들었다.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 체제를 요청하고자 교육지원청에 요청 장학(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홍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해당 내용>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현황]

구분	운영	계	구성 현황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별 1단	17단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대학 지역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10명내외로 구성운영

< (예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대학, 지역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10명내외로 구성운영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서석초등]학교 담당자: 조성연

과장	1과장	2023. 8. 30.(수요일) (14:30 ~ 16:40)	
과장	2과장	2023. 8. 31.(목요일) (16:00 ~ 18:40)	
과장	3과장	2023. 8. 22.(목요일) (16:00 ~ 18:40)	
연락처	010-5617-3291		
이메일	chaseh77@naver.com	주소 특수학교 교실	
문의 해결처	1.학년 특수교사(공과생의 개별교육지원) 교장 선생님,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교감(담당 교사 중) 및 관련 부서인		
지원 항목(✓)	진료()	배달()	
지원 요청 영역 (양쪽선택가능, ✓)	특수교육업무 및 컨설팅서비스	과별특수교육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문제해결 능력	기타
기타 요청사항	- 연구실현학교 특수이정원 교사를 컨설팅으로 요청함. - 각종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협의 -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특히 통합학급 수업활동시의 도전행동에 대한 행동규제 방안, 심리적 지원 방법 협의함		
위와 같이 홍천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2023. 8. 1.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자료16>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교육지원청에는 장학 제도가 있고, 최근에는 인권과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장학 활동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내용 없는 형식적인 행위일 경우도 많다. 장학사 및 컨설턴트가 현장을 위한 지원적인 마음은 별로 갖지 않은 채 영양가 없는 듣기 좋은 말,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관념적이거나 권위적인 말만 던지고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들은 크게 기대

하지 않고 거절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도 그런 현실을 알기에 활용할 생각을 처음엔 못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고 변용해서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의 장학제도는 형식적이더라도 진보적으로 변화된 면이 있긴 했다. 장학 내용도 예전에 비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컨설턴트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수소문 끝에 섭외하였고, 학교 상황(쟁점 사안과 구성원들의 특성, 예상 반응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전에 공을 들여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라는게 늘 그렇지 않은가 준비한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지만 무관심 속에 관성대로 흘러가던 흐름 속에서 한번쯤 되새겨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고 사안을 주목시키는 힘은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통합교육 컨설팅 때 이루어진 장학 내용 중에 내게 남은 것은 ‘통합교육의 주도권은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가져야 한다.’ 는 것이었다. 그만큼 본교 상황이 특수교사에게 의존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그 협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함께 있던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인식되고 공감되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이후 통합학급 상황에서의 통합학급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을 몇 차례 관찰하고 그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재해야 할지 조언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본교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하기를 조언하였으나 이는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거절했다.(교사들에게 자기 교실을 공개하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교감님은 힘들지만 한 통합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이 모든 이야기가 오가는 맥락을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 컨설턴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협의가 어려울 부분으로 예상했던 행동 중재계획 안에 위기행동 발생 시 학생 보호 지원 및 책임질 인력을 협의하는 부분에서는 역시나 난항을 겪었다. 처음에 지원을 거부했던 교감님이 1차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되었지만 교감 부재 시 2차, 3차 담당 부분에서는 갑론을박 답답한 논의만 이어질 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책임과 그 의견 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일은 컨설팅 장학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참석하지 않았던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컨설팅은 “교수들이나 와서 하는 이야기이니 학교에서 꼭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하면 된다” 며 전혀 요청 장학에 권위를 두거나 장학 받은 내용에 따를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위기 행동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인력에서는 빠지고 상징적인 책임의 자리에만 있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행동중재 계획의 온전한 실행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2023년 9월 1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고 10월에 해설서 자료집이 배부되었다.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부분은 현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매우 아쉬웠다. 다만 해설서에 학생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생활지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와 그 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 이를 들고 학교장을 다시 설득해보기도 하였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자료1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학생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생활지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 중 일부>

서식4 일시 분리 지도 추진 절차(예시)

절차	담당	주요내용
사전준비	학교장 및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개정, 수업 방해 학생 일시적 분리 지도방안* 마련 •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실시 절차 등 • 생활지도 고시 내용 및 학칙 개정 내용 공포·홍보
교실 내 분리	수업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분리 좌석 및 지정 위치로 이동 지시 • 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 • 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
교실 밖 분리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외 복도로 분리 ※ 가능한 경우 복도에서 수업내용 청취(또는 별도 과제 부여) • 별도 분리 장소(침상실 등)로 이동 ※ 수업교사는 비상벨 시스템, 내선 전화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직원 등에게 분리 요청 • 분리장소(침상실 등)에서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학교장에게 분리 사실 및 학습 현황 보고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가정학습)	학교장 (교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 • 교실 밖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가정학습 학부모 확인서 전달

<자료18> 생활지도 구체적인 예시

설득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누구나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움직이며 보수적인 처신을 하는 교장님을 이 정도의 정책 변화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이후 ‘행동 중재 지원 및 위기행동 대응팀 연수 및 협의회’를 명목으로 열고, 학부모를 비롯해, 학부모 권리 옹호 역할로 장애인 부모회를 초대하여 한번 더 설득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실질적인 지원역할에 학교장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못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홍천군 장애인 부모회의 도움을 받은 과정도 덧붙이자면, 본교 상황은 학생의 학부모가 회의 상에서 당사자의 유리하거나 적절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회의 자리에서 교원으로부터 주의해야 발언이 서슴치 않게 나오며 협의 결과도 그에 쏠려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지적장애 부모의 진술 조력, 권리 옹호의 역할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부모회’ 3군데의 기관에 문의를 했고 어렵게 홍천군 장애인 부모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 장애인 옹호 기관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사안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었다. 사실 부모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행동중재지원및위기행동대응합의실시기간

행동으로 키워는 행복한 공명교과

초등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및 위기행동대응팀 협의 실시

1. 관한: 초등학교-4127(2023.9.15.)
2.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행동특성에 적합한 학교적용 지원 및 생활지도방법 협의 및 체계적 실행
3. 날짜: 2023년 10월 19일(금) 15:00
장소: 특수학교 교실
4. 참석자: 교장, 교감, 교무, 해당학생 통합학교 교사, 특수교사, 해당학생 보호자 및 권리옹호자

구분	직위	성명	역할	비고
학교장	교장		긍정적 행동지원 총괄 및 위기행동 관리 지원	
원장	교감		긍정적 행동지원 총괄 및 위기행동 관리 지원	
위원	교무		위기행동 관리 지원	
간사	특수교사		특수학교 환경에서 중재 협의록 작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원	통합학교 교사		통합학교 환경에서 프로그램 실행	
위원	보호자		가정에서 프로그램 실행	
위원	보호자 권리 옹호 (홍천군 장애인 부모회)		장애 인권 보호 및 가정에서 프로그램 실행 지원	

5. 협의안건
 - 긍정적 행동지원(행동중재계획 및 위기행동관리계획 포함)의 목적과 추진배경
 - 학생특성 및 지원 방안
 - 행동중재 방안 및 위기행동관리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및 각 구성원의 역할

붙임: 2023 긍정적 행동지원계획 위기행동 관리계획 연수 1부, 2부, 3부.

<자료19>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및 위기행동대응팀 협의 관련 공문

부모회 측에서도 행동 중재 계획에 대한 이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그 안에 분리 조치가 필요할 만큼 위기 행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해 없이 매끄럽게 이해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다. 나는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쌓아왔던 관계가 있어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도전행동 지원 계획

<p>도전행동</p>	<p>가. 가까운 곳에서 지도하는 교사를 행하며 욕하기, 주먹질하기 등을 하며 위협하는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p> <p>- 하기 싫은 요구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심심할 때 가장 친근하게 대해주는 이 혹은 교사에게 욕하기, 주먹질하기 등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p> <p>나. 교사를 비롯해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드러누워 대굴대굴 구르기, 잡고 있는 손을 깨물기 등을 한다.</p> <p>-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에게 통제와 제지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고, 물건 던지기, 깨물기, 드러누워 대굴대굴 구르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울기를 함.</p>		
<p>목표행동</p>	<p>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p>	<p>장소</p>	<p>교실 및 특별실/ 외부 활동장소 등</p>
<p>중재 계획</p>	<p>중재 방법</p> <p><자신중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제를 제시했을 때 도전 행동 보일 경우 과제를 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2. 평소 학생의 긍정적인 수업 참여 행동(학습 역할 포함)에 칭찬과 로브 마사지, 웃어 입어보기 등의 강화를 제공한다. 3. 본인의 요구사항이나 기분을 도전행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예: 짤머요, 속상해요, 과자 주세요, 산책 갈래요, 놀고 싶어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 교수한다. 4.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충분한 휴식과 간식관급, 나 잡아봐요 등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각각 통찰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도록 지원한다. 5. 산만하거나 감정적 등요, 충동을 유발하게 하는 자극이 높은 활동, 활동 유발 빈도가 높은 물건은 보충하고 일관적인 약속에 의해 제공하도록 한다. <p><사우중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도나 빈도면에서 낮은 단계의 공격행동(1단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무관심을 보이거나 조절하기를 기다리며 조금 떨어져 지그시 쳐다본다. 2. 강도가 조금 높아지고 더 상승된 것 같은 경우(2단계) 가까이 가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돼.", "멈춰.", "그만해." 말하고 대안적 언어("짤머요.", "속상해요.", "나 갈래요.")를 알려준다. 3. 교사나 친구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였을 경우(3단계) 손을 잡고 행동을 제어한 후 눈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사과하도록 한다. 4-1. 크게 울며 드러누고 감정이 격해졌을 경우(4단계 위기행동 단계) 던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곁에 다가가지 않도록 물리적 거리를 둔다. 주변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는 어른들도 쳐다보지 않고 떨어져 있도록 한다. 4-2. 쉽게 순계하지 않고 손을 잡고 "멈춰, 지금 멈추면 돼." 하며 진정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4-3. 멈춘 후에도 감정의 여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멈춘 것 같았어. 하며 한번 안아준다. 이제 일어나." 함께 말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혼자서 수습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4-4. 교실의 한쪽이나 별도의 조용한 공간(방과후교육실, 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차분하게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곁에서 임장한다. 5.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오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기분 나쁜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차분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p>위기행동 대응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이나 몸으로 부딪히거나 던질 수 있는 물건을 옆으로 치우고 주변의 지켜보는 이들이 재빨리 피하도록 양해를 구한다. 손을 잡고 침묵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짧은 말과 차분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기다린다. 2. 과격한 행동을 멈추고 잠시 안정을 취한 뒤 교실의 한쪽 공간이나 위에 제시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3.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사, 담임교사 또는 교감 및 교과담당교사와 함께 조용히 산책하거나 혹은 가만히 안정을 취하며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 4. 위기행동이 벌어지기 전 단계의 도전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미 감정이나 행 		

<자료20> 도전적 행동 지원 계획 일부 1

	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를 넘겼으므로 위 2,3번의 심리지원을 하도록 요청한다.
학부모 의견	행동을 조절하고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 위기 행동 발생 전 도전 행동 지속 시 대처

구분	대처 요령	학생 보호
수업 활동 시	해당 학생을 방과 후 교육실 및 별도 조용한 공간으로 인계하여 휴식 및 심리 안정을 취함	교감 및 교무실 교사 특수교육지도사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시	해당학급 교실 혹은 특수학급의 한쪽 조용한 공간 및 별도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 및 심리 안정을 취함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 특수교육지도사

★ 위기 행동 발생 시 대처

구분	대처 요령	비고
위기행동 발생 시 대응단계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0%;"> 1. 타 학생을 도전적 행동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호 (옆 교실, 도서관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65%;"> 2. 해당학생이 위기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침묵하거나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짧게 말하고 기다리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발이나 몸으로 부딪히거나 던질 수 있는 물건을 옆으로 치운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0%;"> 4. 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가 교무실(교감)에 지원 요청 교감이 교무실 교사들에게 해당 학생 보호 요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0%;"> 5. 도전적 행동 학생 안정 (별도 공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30%;"> 6. 도전적 행동 학생 보호 및 타학생 수업 실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width: 65%;"> 6. 안정 후 수업 참여 긍정적행동지원계획에 따라 교육지원 </div> </div>	<p>전화, 긍정적 행동지원벨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함</p> <p>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혹은 냉정을 갖고 일상적으로) 대응함</p>
위기행동 발생 후 주의사항	<p>* 해당 학생이 교실의 한쪽 공간이나 위에 제시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감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록 하나 반드시 흥분된 놀이보다는 차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p> <p>*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사, 담임교사 또는 교감 및 교과담당교사와 함께 조용히 산책하거나 혹은 가만히 안정을 취하며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p>	

<자료22> 도전적 행동 지원 계획 일부 2

도전적 행동을 위한 중재 방법

〈사전 중재방법〉

1. 과제를 제시했을 때 도전 행동 보일 경우 과제를 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
2. 평소 학생의 긍정적인 수업 참여 행동(학급 역할 포함)에 칭찬과 로션 마사지, 옷 입어보기 등의 강화를 제공한다. ↓
3. 본인의 요구사항이나 기분을 도전행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예: 힘들어요, 속상해요, 과자 주세요, 산책 할래요, 놀고 싶어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 교수한다. ↓
4.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충분한 휴식과 간질간질, 나 잡아봐요 등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감각 통합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도록 지원한다. ↓
5. 산만하거나 감정적 동요, 흥분을 유발하게 하는 자극이 높은 활동, 갈등 유발 빈도가 높은 물건은 분명하고 일관적인 약속에 의해 제공하도록 한다. ↓

〈사후 중재방법〉

1. **강도나 빈도면에서 낮은 단계의 공격행동(1단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무관심**을 보이거나 조절하기를 기다리며 **조금 떨어져 지그시 쳐다본다.** ↓
2. **강도가 조금 높아지고 더 상승될 것 같은 경우(2단계)** 가까이 가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돼.”, “멈춰.”, “그만해.” 말하고 **대안적 언어(“힘들어요.”, “속상해요.”, “나 갈래요.”)**를 알려준다. ↓
3. **교사나 친구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였을 경우(3단계)** 손을 잡고 행동을 제제한 후 눈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사과하도록 한다. ↓
- 4-1. **크게 울며 드러놓고 감정이 격해졌을 경우(4단계-위기행동 단계)** 던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곁에 다가가지 않도록 물리적 거리를 둔다. 주변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는 어른들도 쳐다보지 않고 떨어져 있도록 한다. ↓
- 4-2. 길게 혼계하지 않고 손을 잡고 “멈춰, 지금 멈추면 돼.” 하며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
- 4-3. 멈춘 후에도 감정의 여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멈춘 것 잘했어, 하며 한번 안아준 후, 이제 일어나.” 짧게 말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혼자서 추스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
- 4-4. 교실의 한쪽이나 **별도의 조용한 공간(방과후교육실, 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차분하게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곁에서 임장한다. ↓
5.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오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기분 나쁜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차분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23〉 도전적 행동을 위한 중재 방법

6) 통합교육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지도, 이를 위한 협력 체제를 만드는 어려움

본교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2022년부터 행동중재계획을 세우고 실시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도전적 행동의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적절한 행동으로 대체해 갈 수 있도록 학습, 교정을 돕는 전략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학생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를 바꿔 새롭게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행동이 극심하게 되었을 때 지원하는 세부 절차들을 점차 상세하게 세워가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을 긍정적 차원에서 먼저 강화하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수도 학생의 상황을 살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협력적 지원체계 없이 특수교사 혼자서 온전히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어떤 일은 마음먹고 혼자서도 가볍게 움직여서 실행될 수 있는 일일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앞서 어떤 협의 하나를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야 하고 수없이 많은 조건의 협력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일 때도 있다. 나의 경우도 행동중재 계획을 제대로 계획하여 실시하기까지 여전히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동중재의 상세 내용을 통합학급에서 적용하도록 통합교육 담당 인력을 연수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그것까지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도전적 행동 중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행동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 뿐이지 그 욕구 자체는 정당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동중재를 처벌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쉽게 분리나 강압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학생 중심에서 욕구와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것이 환경에 적절하며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돕고 한번 더 생각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점이 현실에서는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알맞게 실시하도록 연수하는 일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느낀다. 먼저는 그만큼 도전적 행동 지도가 어려운 일이니 사람들은 협력이 아니라 구분해서 맡기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토록 섬세하고 학생 중심적인 관점을 통합학급 담당자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것은 특수교사가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학생이 도전 행동을 하는 이유가 마치 통합학급 교사에게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번 연수하여 전달할 정도의 쉬운 내용도 아닌 것을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잘 듣고 실행할 것이라는 신뢰도 없는데 애써서 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현장은 너무 바쁘고 협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예방적 접근, 특수교사와 협력할 지점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요구의 정도가 무척 까다롭고, 무리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통합교육 현장에서 협력 체제 없이 특수교사 혼자서 행동중재 지원은 가능한가? 통합교육 현장이지만 분리교육을 하는 전일제이고, 특수교육 지원이 충분하여 특수교사가 오롯이 그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다. 요컨대 통합교육에서 '협력'을 빼고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동 중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이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특수교사 혼자서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고 구조

적인 변화,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한 의식적인 격려와 지원(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다.

한편 대도시 과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방 소규모 지역으로 오니 전일제 배치가 생각보다 많구나 체감한다. 이 통합학급 현장에서 전일제 배치는 문제가 많은 배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규모 지역학교의 전일제 경우에는 지원도 없이 특수교사 혼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방치하는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지역학교는 다른 특수교육 지원서비스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일제 학생의 경우 대체로 중증장애학생의 경우에 해당할텐데, 겹겹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더욱 열악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내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더욱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의 지원도 매우 빈약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만약 내가 끌어낸 부족한 외부지원이나마 요청 장학이라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컨설팅 협의(개학 후 바로 실시됨) 결과를 참고하여 ‘행동중재계획 및 위기행동대응계획 포함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계획을 한데 모아서 개학 후 한 달(9월 15일)안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차이지만 본교에서는 협이가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먼저 협의된 계획안을 결재하여 실시하고 이후 재차 협의회를 실시한 후 수정한 계획을 추가로 결재를 올려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 소모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1학기 말 교육과정 평가회 때(7월) 본격적으로 제안하여 대략 5차례의 공식·비공식적 협의회를 거쳐서 10월 13일이 되어서야 (내 생각에는 온전하지 못한)행동중재 계획’을 비로소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그런 소동을 거치며 나는 내 학생에게 온전히 눈을 맞추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고백컨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원치 않는 일에 굴복해야 할까 봐 두려워했고 날카로웠던 시기라 학생들에게도 그런 나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10월 13일 행동중재 지원 및 위기행동대응팀 협의회에서 기록한 협의록 일부(특수교사 작성)>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안에 위기행동대응단계에 따라 위기행동발생하였을 때, 혹은 위기행동 발생 전 심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수교육지도사가 주로 담당 지원하되 1순위 교감, 2순위 교무로 연락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으므로 3순위로 교장에게 연락하여 학생 보호 책임을 하도록 함(특수교사 의견)

-위기행동대응 지원인력에교장을 넣지 않기를 바람. 1~3순위로 명확하게 지원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필요시 적당한 인력이 지원하기를 바람(교장 의견)

-위기행동대응 지원인력에 1차로 빈 수업이 있는 교원이 지원하도록 하고, 2차로 관리자가 지원하길 바람(교무 의견)

- 위기 행동 지원에 대한 구성원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안 부결됨**

협의록 작성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모호하게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10월 13일 행동중재 지원 및 위기행동대응팀 협의회 실제 기록으로 남긴 협의록 일부(관리자 작성)>

-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안에 위기행동 대응단계에 따라 위기행동 발생하였을 때, 혹은 위기행동 발생 전 심리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수교육지도사가 주로 담당 지원하되 1순위 교감, 2순위 교무로 연락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으므로 3순위로 교장에게 연락하여 학생 보호 책임을 하도록 함.(특수교사 의견)

<학교방안>

위기행동상황 발생시 지원인력의 순위를 정할시 출장, 수업, 교외 순시 등 부재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무실(교감)로 연락 체계를 일원화하여 대응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하여 교무실 근무자들 중심으로 안내하고 교육한다.

업무기록 일부

2023 08 25

등교시간에 교무부장이 전화해서 00이 신발장 쪽에서 매우 안좋은 상태로 있으니 가보고 전화함. 가서 보니 크게 소동이 일어난 듯 느껴지지는 않으나 00이 소리치고, 담임 선생님께 신발을 던져 맞겠다고 함. 00이 손을 잡고 "안돼." 하고 이야기하니 바로 미안해. 하고 사과함. 담임선생님께서는 바로 자리를 뜨심. 00이를 데리고 교실로 올라오는 길에 교무실에서 현장학습 당사 건물로 교감님과 이야기 중 00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하느라 1교시 늦음 (이야기 중에 옆에 있던 교무부장이 끼어들어 00이 아침부터 상태 안 좋을 때는 버스 기사님 연락하도록 해서 등교 지도를 (지도사가 아닌) 특수교사가 직접 해야 하지 않느냐. 통합학급에서 00이 힘들어하면 6학년(다른 특수학급 학생) 수업시간 줄여서라도 00이의 특수학급 지원시간을 늘려야하지 않겠냐 라고 발언함)

2023 08 30 통합교육 컨설팅 실시, 행동중재계획, 위기행동 발생시 협력체제 만들기 위한 협의

학교장 참석하지 않음

교감 발언- 통합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 힘들기만 하고...

(우리학교에서는 같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통합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는 의미로 이야기 하였다고 이후 9.22 면담 때 이야기 함)

2023 08 31

통합교육컨설팅 보고(교장실에서 교감님과 함께, 특수교사 3인이 있는 자리)

교장- 컨설팅은 교수나 와서 하는 이야기이니 학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며 위기행동 대응단계에 교장은 넣지 않도록 함

교감-선생님(특수교사)이 뭐가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공감이 안된다고 하심

2023 09 07

더배움 공동체 배드민턴 대회(교직원 동호회)라 하여 교직원 많은 수가 출장으로 없었고 교장님도 참여한 듯

교육청에서 받은 특별지원으로 지원할 치료교육 내용 결정, 시간표 변경, 행동중재계획 등의 안건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자리 만들어 달라고 출근 후 교감님께 부탁 하였으나 모두들 오후에 출장(더배움공동체 배드민턴 대회)을 달 예정이라 어렵다고 함.

그래서 내가 00이의 특별지원건만 먼저 상의하자고 하여 가능한 빨리(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하니 쉬는 시간이라도 소통하자고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하시고는 2교시 지나서도 연락이 없음. 그래서 다시 교무실로 내려가 확인하니 교감님이 자리에 안계심. 결국 다시 올라와 메신저로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재촉하는 메시지 보내 놓았음. 그제서야 4교시 시작 전에 연락 와서 소

통함. (언어치료실 교사가 학교방문교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상급학교 배치 신청서 서류 기안 올리고, 특별지원 신청도 기안 올렸으나(14:30 경) 교장, 교감님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교직원이 없고 결국 결재 나지 못함.

2023 09 08

교감님 안계시고(어제 자리 비운다고 말씀하지 않음) 교장님도 오후에 출장 조퇴여서 어제 기안(2건)을 기결 취소하고 결재 라인 다시하여 올림.

2023 09 11
 개별화 위원들 함께 모임- 00이를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교무부장 발언함

2023 09 13
 아침에 개별화위원들 개별화 결재 다 받으려 했지만 00으로 인해 받지 못했고, 통합학급 담임교사도 개별화교육 및 위기행동 지원계획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메시지 보냈지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침에 구두로 말씀드려서 확인하게 함. 내용은 확인하는 것을 보았지만 수업 후 관사 쪽으로 가신 것을 보았고, 이후 메시지 커 있으나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채 **개별화 결재가 나지 않음**. 근무상황부 기록은 없음.

2023 09 18 개별화 결재 완료(법정 기한은 9.15까지 있음)

*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 진행의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나중에 고충심사청구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느꼈기에 업무기록도 적어 남겨 두었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행동 중재 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적용 단계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갈등 상황이 잠재된 채 긴장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한 중재의 상세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선 특수교사 외에 다른 구성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말 안듣는 힘든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면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한 교육 방식에 혼란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7) 24년, 끝나지 않는 어려움(잠시 진정되었다가 극심해진 도전적 행동)

2024학년도 특수학급 현황

1. 학년 실태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	·	·	1	1	·	2
여	1	·	·	·	·	·	1
계	1	·	·	1	1	·	3

2. 장애 유형별 실태

구분	지체장애	발달지체/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계
학생 수	2	1	·	·	3

3. 학생 현황

순	학년	이름	성별	장애 영역	복지카드 유무	방과후 학교	치료 지원	통학비 지원	배치
1	1	윤**	여	뇌병변장애(중중)	○	○	○	X	재택수업
2	4	윤**	남	뇌병변장애(1급)	○	○	○	X	재택수업
3	5	심**	남	지적장애(중중)	○	○	○	○	시간제

<자료24> 2024학년도 특수학급 현황

올해 2024년에는 특수학급 학생의 실질적 인원이 1명으로 줄었다. 졸업생을 제외하고 2명의 학생으로 특수학급이 운영될 상황이었는데 작년 1학년 학생이 올해 초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학급 인원이 감소되었다. 전학한 학생은 작년에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은 후 오히려 가해자들 측에서 더 무리한 주장과 장애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사안을 다루는 가운데 나 역시 가해자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민원을 받기도 하고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된 집단 항의를 받는 일도 겪었다. 다행히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 거절하고 버텼더니 지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조용히 사그러들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욕적인 일을 겪는 가운데에도 관리자들은 교사와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육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의 특이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 관리자들의 개인적 역량과 관점에 따라 통합교육, 특수교육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여러 겹의 안정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원 체계는 그만큼 빈 곳이 많고 허술하다는 뜻이겠다.

학생이 1명이면 업무가 쉬워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만큼 지원 인력 배치도 빠졌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의 경우 지도사의 숙련도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마저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빠진 상황은 통합교육 지원의 측면에서 특수교사가 감당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이 고학년이 되어 늘어난 시수를 특수학급 지원으로 생활지도, 행동 중재에 집중하는 시기로 보내야겠다 계획한 해였다.

* 2024년 5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특수학급 지원	통합학급 지원
1학기	국, 수, 사, 과, 영 (17~19)	도, 음, 미, 체, 실, 창체 (10~12)

<자료25> 2024학년도 5학년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

개학 후 첫 한 달은 꽤 안정적으로 보였고 그동안의 지도가 빛을 발해 학생의 성장이 크게 발돋움하나?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날 즈음 갑자기 도전적 행동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에게 집착적으로 폭력 행동을 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나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여도 비교적 나의 지시는 잘 따르는 편이었는데, 5학년이 되어 주중 29시간 중 특수학급 시간 약 19시간, 통합학급 지원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나와 밀착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학생의 도전적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면 회피 기능과 관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였는데, 아마도 밀착된 관계로 긴 시간을 같이

보내니 그렇게 관계 고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학생에게 잔소리 하는 사람도 애정을 줄 사람도 나 밖에 없으니 말이다. 여튼 그렇게 시작한 극심한 도전 행동(이전에 보였던 행동과 또 다른 차원의 도전 행동)은 4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2달여간 거의 매일 1~3회 이상 1회 발생시 1시간~2시간 지속되었으며, 빈도와 강도도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그 정도가 되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나와도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이에 대한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다. 통합학급 교사도 관리자도, 교육청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저 특수교사가 조용히 감내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학생의 행동중재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 흥천군청에서 지원받은 교육경비는 이제 막 교부되었지만 나는 매일 극심한 폭력 행동에 대처해야 했고 위기 행동 발생 시 협력해야 하는 대응 절차는 이토록 빈번하고 극심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차피 특수교사 혼자서 실행하는 중재 계획만 있을 뿐 실제로는 행동 중재 및 위기행동에 대응하는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쯤 되니 특수교사 혼자서라도 행동 중재 계획을 제대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을 정도였다. 결국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쓰고, ‘교원 치유 회복을 위한 지원’ 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과정도 논의할 것 많은 사안인데 여러 제약으로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겠다. 학생의 폭력이 심각하여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고시’와 ‘학교 규칙’,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출석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 수위의 사안이었다는 것만 말해두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도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온적이고 방치되는 상황이라 고충심사청구 혹은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고민하다가 한번 더 협력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또 다시 통합교육 컨설팅을 요청해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당시 협의회 분위기는 협력점을 찾기 어려워 답답한 국면에 이르렀고 나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건강상황이 되어 한 달 병가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또 다시 대소동을 치른 후에야 학생은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게 되어 행동의 변화가 생겼고, 학교에서도 내가 요청한 것을 일부 받아들여 일단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

<24년 통합교육 컨설팅 안건 제안>

<p>가. 도전적 행동 지도와 관련하여 심리안정 공간 및 대체활동 명확하게 하기</p> <p>해당 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폭력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이기에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으로 안정하기, 침묵하며 걷기가 제일 좋은 활동으로 확인되었음.</p> <p>위기행동 발생 시 협의한 대응체계에 부적절하거나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느껴짐</p> <p>교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먹고 오가는 산만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해당학생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다른 즐거움으로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음.</p> <p>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 보이거나 도전적 행동, 위기행동 보일 경우 침묵하며 걷기로 대체활동 진행하길 바람</p>
<p>나. 도전적 행동 지도와 관련하여 위기행동 발생시 학생 보호 역할 좀 더 구체적으로</p> <p>‘1순위 교감, 2순위 교무실 교직원’ 이렇게 모호하게 둘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 명확하게 단계 명시하기 바람.</p> <p>더불어 긍정적 행동중재벨 사용과 관련해서도 논의(행동중재벨 건은 중요도 낮음)</p>
<p>다. 위기행동 하루 2회 이상 발생 시 가정학습 협조 방안 논의</p> <p>* 위기 행동이 하루 2회 이상 발생했을 시 학부모님께서 학교로 오셔서 1시간 학교 주변 침묵으로 걷기 지도하기 혹은 가정으로 인계</p> <p>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 및 교육활동 요청(학생의 부친이 특수교사와의 상담 자리에서 정서적, 물리적 위협을 가한 일이 있으므로 관리자 동반하여 상담하기를 원함. 이번 통합교육컨설팅 자리에 부친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따로 자리 마련하여 상담하기를 바람.)</p>
<p>라. 위기행동이 1주일 이상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교사나 교우들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났을 때</p> <p>출석중지 요청 - 등교하되 수업에 들어갈 수 없는 징계</p>
<p>마.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 협의</p> <p>* 강원도 교육청 행동중재 예산(200)+ 홍천군청 교육경비(125) 예산으로 맞춤형 기관 섭외하여 진행</p> <p>* 작년과 같이 놀이치료 및 감각통합활동을 통한 행동중재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함</p> <p>강원대병원 발달장애행동증진센터 기관 이용 어렵고, 홍천읍, 원주, 춘천권의 치료교육 교사들도 학교방문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음, 홍천군 소재 치료교육 기관 이용 관련하여 협의</p>
<p>바. 특수교사 업무 강도 조절</p> <p>학생 과밀착된 시간을 보내므로 해당학생 공격행동의 주요 대상이 됨. 조금이라도 분리될 필요가 있음.</p> <p>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수업은 스포츠 강사가 있으므로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수업지원을 하지 않는다. 2) 점심시간은 담임교사 지도하에 해당학생은 통합학급 친구들과 식사하며 생활지도한다. 특수교사는 이에 지원하지 않는다. 3) 통합지원 하는 특수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모델링을 참고하여 담임교사가 주당 7시간(금 6교시 하교시간 제외, 1시간 통합지원, 3시간 스포츠강사 지원 포함)의 지도를 책임진다.

<자료26> 2024학년도 통합교육 안건 제안

2. 나가며

지금까지 서술한 사안들을 겪으며 나는 없는 것을 바라고, 바라면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으며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은 정말 통합교육이 불가능하며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 통합교육, 통합현장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행동 중재 지원 협력체제는 무슨 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이 나에게로 되돌아와 이렇게 애를 써도 안되는 것이 나의 능력 부족인 것처럼 느껴져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는 마치 내가 학생이 힘들어서 통합교육 교사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여 만들어진 통합교육 협력 체계,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부족하고 그 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행동중재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장애학생의 행동중재를 위해 나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부산)에서도 통합학급 담당교사나 관리자 지원이 이루어지 않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에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들도 결국 특수교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일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협력 체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원 체계의 부족함 속에서 특수교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보고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의 양과 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교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힘드시긴 하겠지만 더 힘든 학교가 있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닌 본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교육청에서 나에게 그냥 참아보라고 이야기하며 제시한 사례는 ‘과밀이어서 교사가 화장실도 못가는 학교’, ‘중등 전일제로 4시 50분이 되어서야 수업이 끝나는 학교’ 등이다. 맞다. 나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학교가 있는 건 나도 알지만 **최악의 상황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느낀다. 그렇게 어려운 학교의 지원을 빼앗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어려운 학교라도 어렵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태도를 바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요청 장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점’,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난다면 컨설턴트로서 명확히 설명해주거나 그 해당하는 담당자와 상세한 상황 살펴 직접 상담하는 노력이라도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권위적 장학을 지양한다는 명분으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실어서 추진할 일에서도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돈 안 드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고 힘듦을 잘 참으라 다독이는 것이 장학의 역할은 아니지 않은가? 지역사회 소규모 지역까지 특수교육 지원의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교권은 학생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기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살펴보면 특수교사를 둘러싼 협력할 대상의 무책임한 태도, 지원이 부족한 여건 등 다른 조건과 역동하여 학생을 잘 지원하려는 열의가 업무의 과중, 소모적인 일에 열정 낭비로 이어진다. 위에 나의 업무 기록이 딱 그러한 예시이다. 그런 것들 챙기느라 결국 학생을 제대로 지원하려 했던 본래의 목적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갈등 관계, 분쟁에 시달리니 특수교사는 언제든 그런 일에 휘말릴 때를 대비하여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용히 체념적으로 지내거나. 이렇게 말하면 한편에서는 낮은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 학생을 지원하기 보다는 방어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특수교사가 마치 집단적 특성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지금 현장에 그런 특수교사가 많다면 무엇이 특수교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특수교사가 처한 환경, 제도적 차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의견수렴

백동주(장애인 당사자, 특수학교 전공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고 있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백동주라고 합니다.

앞서 발제자분께서 도전행동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중재를 위한 공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은 통합학급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과 마찰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도전행동을 하거나 책을 넘기거나 학습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소음이 발생 돼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 마찰은 학년을 거듭할수록 심해지며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마찰과 민원이 극에 달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통합학급에 가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할 뿐 자율학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행동중재와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외롭고 눈총만 받는 자율학습이 아닌 편한 공간에서 진짜 "자율학습"을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시 구술을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학생의 경우 따로 평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때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척추측만증과 같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학급 내에 휴식공간이 마련된 곳도 있지만 수업이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기에 소란한 분위기로 인해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교육적 지원과 행동지원 더 나아가 휴식지원까지 이루어져 특수학급 학생들의 원활하고 편한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하여

배경민(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저희"(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중애모)"는 자기 주장의 한계로 항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활동단체입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라 함은 뇌전증, 지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섭식 장애와 회귀·난치질환까지 적게는 2~4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런 장애 특성으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어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중복뇌병변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발제문에 통감하며

먼저 특수교사의 투쟁사같은 발제문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중증장애학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보려 고군분투하신 선생님의 고단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 그리고, 이해와 협력 부족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심지어 지역 부모회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중증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보려 하였으나 결국 병가까지 내어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상하신 내용을 보며, 물리적 통합일 뿐인 통합교육의 갈 길이 멀다 생각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으나 도움이 되지 못했고, 더 힘듦을 증명해야만 지원이 되는 현실과, 지원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고, 힘듦을 참아 내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현장이 참담했습니다.

3.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의 교육 현장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의 교육 현실도 발제문의 통합교육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지체특수학교"에는 대학 진학도 가능한 단순 지체장애 학생부터 중도중복장애학생, 그리고 석션이나 경

관 영양 등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까지 한 공간에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언급된 '그 욕구 자체는 정당하며 존중되어야 한다'에는 "신변처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업무 기피로 교육을 위해 아니, 생명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욕구인 "신변처리" 조차도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 관련 새로운 제도나 법이 만들어질 때도 중증장애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시기의 교육 정책이 그러했고,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없어 CCTV의 필요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큼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은 이렇게 힘든 의무교육 기간을 견뎌내며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이후의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중한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외로운 섬처럼 집에만 고립되어, 학령기 동안 교육받아 성장한 모든 것이 퇴행하여 당사자도 부모도 허무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4. 특수교육의 방향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리고 통합교육에서도 특수학교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특수교육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학교 증설

통합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니 특수학급을 늘려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통합교육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아동의 비율과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다면, 지금도 부족한 특수교육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특수학교의 증설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특수학교의 수를 늘려, 적어도 학생의 장애정도나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선택권은 줄 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지 개발 때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지체특수학교 명칭 변경

지체장애 코드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지체특수학교"의 진학 기준으로 인해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이 한 공간에 있으니 교육은 고사하고 돌봄조차도 힘든 현실입니다.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 선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른 이름의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 및 순회로 내몰려 있는 학생들에게도 맞춤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 인력 확대

특수교육 현장에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서로 더 열악한 환경임을 설명하며 교육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개인 활동지원사의 학교 파견 근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이 많은 "지체특수학교"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될 정도로 학교 밖 인력의 의존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관리가 힘든 불확실한 인력이 아니라 실무사 등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확대하여, 활동지원사가 없어 등교를 못하거나, 실무사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넷째. 입학 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파악 및 준비

장애학생이 입학하기 전 신변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의료적 지원 필요 여부,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필요 기기 등이 미리 파악되어 입학과 동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입학 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힘들 경우,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학생의 교육 활동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교육 지원청"에서 입학 전 미리 파악하여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섯째. 졸업 후 준비 및 지원

"특수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강화해서 중증장애학생의 졸업 후 평생교육에 관한 준비와 지원도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 및 복지 선진국은 장애인의 전 생애를 지원하며,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갈 곳까지 설계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각자 알아서 졸업 후 갈 곳을 찾아내어야 하는 실정이다보니, 중증중복뇌병변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어려움

은 더욱 큼니다.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증장애학생의 졸업 후 평생교육을 준비하는 특수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5. 나가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은 발제문의 특수교사처럼 바꾸고자 하는 투쟁 정신이 강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너무나 힘든 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 격차도 심각하여 어디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 ◆ 물리적 통합만이 아닌 진정한 통합교육,
- ◆ 중증중복장애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특수교육,
- ◆ 어떤 교사·어떤 부모를 만났어도 공평한 특수교육,
- ◆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양과 질이 같은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참교육실장)

통합교육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통합교육은 특수교사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 발제문에서 나온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이란 단어가 매우 뜻깊게 느껴졌다.

●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

학교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학교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

우리는 발제문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협력 체계)에 대해 고민과 그에 대한 실천하기 위해 정다운학교(교육부)나 더공감학교(서울시교육청) 운영 사례, 다양한 방법의 통합학급 수업지원 및 일반교사와의 협력 수업 운영 등 많은 노력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설사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특수교사나 협력했던 일반교사가 전보로 다른 학교로 이동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발제문에서 보여지는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자.

1. 특수학급 교실 환경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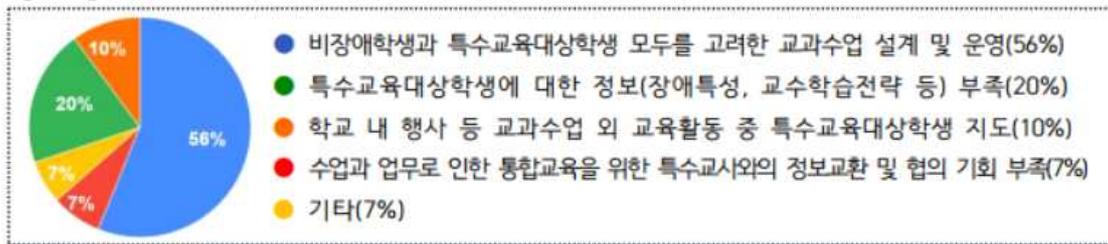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위의 설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학교관리자나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적 환경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교사 관련 문제

가. 일반교사의 어려움

[참고] 일반교사가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출처: 서울통합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2021.4.21.-4.28.)

위 자료를 보면 일반교사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모두를 고려한 교과수업 설계 및 운영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 인원이 많거나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일반교사의 교육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고,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적절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업 진행이나 수업 속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장애학생의 통합학급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또한 장애학생의 통합수업에 참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 준비와 계획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특수교사와 협의해야 할 시간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나. 특수교사의 어려움

특수교사는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특수학급 수업 및 장애학생 생활지도(행동중재지원), 기타 교육적 지원 등의 업무에서 통합교육 시수 증가로 인해 추가적 업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통합학급 수업 지원 및 조정 등을 위해 일반교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이 제한적이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도 어려워지고, 일반교사와의 협력 시간 확보 및 협의도 잘 안되면서 통합교육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 어려움

학교는 모든 교사가 수업과 학교업무를 맡고 있는데, 특수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수업과 학교업무에 자유롭지 않다. 수업과 학교 업무에 쫓겨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간의 협의시간 부족은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학교 내에서 두 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일관성 있게 지원되기 어렵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3. 장애학생의 지원 어려움

가.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 문제

장애학생이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습 내용이나 속도가 맞지 않아 참여가 어렵고, 이로 인해 학급내 소속감을 갖지 못해 돌발행동이나 방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장애학생의 행동지원의 어려움

1) 긍정적행동지원

긍정적행동지원은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행동 중재 계획(BIP)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며, 기능적 행동 평가(FBA)에 기초하여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해야 하는데 한다. 발제문에서 특수교사 혼자서 목표 행동을 선정하고 기능적 행동평가 및 중재계획 실행 등은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합학급에서 일어나는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는 특수학급에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장애학생의 특수학급 수업운영이 어려워 지고, 특수교사의 수업외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난다.

4. 지원 시스템 문제

가. 지원 인력 부족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지원인력 부족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어려움을 준다. 장애학생이 학교생활 및 수업활동 참여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특수교사가 혼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예산 및 자원의 부족

통합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적절한 시설, 보조 도구,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학급 협력 수업, 교수학습 설계 및 평가, 생활지도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추가 인력 지원으로 수업과 업무 부담을 낮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의 수업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정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개발 시 보편적 학습설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편적 학습설계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를 실시하고 사례를 보급한다.

셋째, 긍정적행동지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 지역 중심으로 지원단을 꾸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다섯째, 적절한 교육환경 구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위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많겠지만 발제문 중심으로 나열해 보았다. 여기서 통합교육 운영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으로 이야기 되었다.

위 이야기는 비단 일반학교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수학교도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의 지원 및 협력, 물리적 환경의 지원, 지원인력과 자원의 지원,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21
2. 서울시교육청, 2023 더공감교실 운영 사례집, 2023
3. 더공감교실 운영사례집(2023, 서울시교육청)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중증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shum@duroo.org)

1. 장애아동과 통합교육

사례 1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몇 번 안 돼요 일례로 선생님들이 이제 법에도 저희 아이들을 밀어낼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통합교육이 의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사21)

학교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포함해서 세운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 관계도 많고 입시도 많고 근데 단적인 예로 자유학년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주제 선택 진로 선택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그것까지 생각해 주는 선생님들은 통합 교육에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담당해야 될 아이고, 안고 같이 가야 될 아이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통합 교육이 좀 어렵고 하더라도 부모랑 특수 교사랑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내 우리 반 애가 아니고 특수학급 아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교사23)

선생님들이 그런 특수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고. 어느 정도는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고 아 애는 안 돼 애 뭘 해도 안돼 누가 해도 안 돼 이렇게 쉽게 단정을 내리는 걸 보고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사22)

[출처 :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사단법인두루

3

사례 2

또 하나는 자폐성 장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2급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교실에 통합학교에 올라가서 충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앉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라도 수업을 하고 얘기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제일 소외가 되더라고요. (교사4)

중학교에 물리적 통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고 초등은 사회적 통합까지 어느 정도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육과정 통합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초등에서조차도 그냥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 통합까지 돼야 통합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교사22)

저는 통합 교육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통합에 좀 멈춰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학생이 수업 통합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할 거 하고 오고 그냥 조금 시간이 좀 흐르는 거에 맞춰서 돌아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수 학습적으로 통합이 된다고보다는 그냥 물리적인 통합에 멈춰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교사19)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나 (교사1)

[출처 : 교육소외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사단법인두루

4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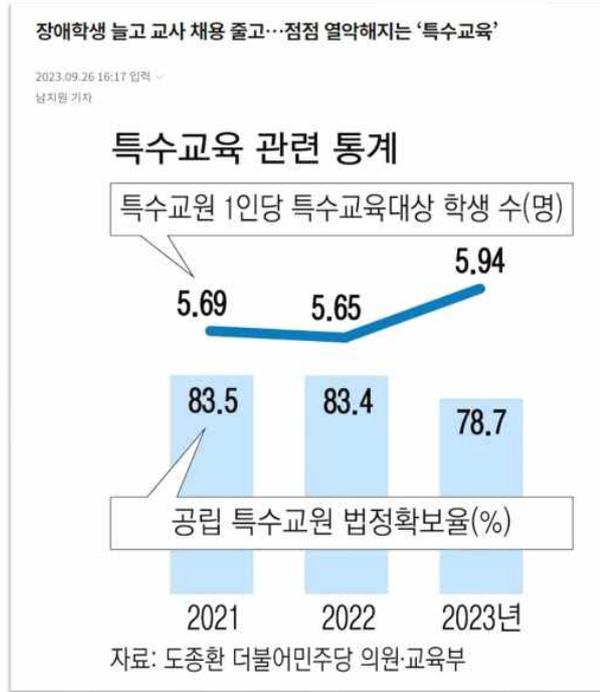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사단법인두루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7

장애인 교육권과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단법인두루

8

장애인 교육권과 법률

■ 교육기본법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교육권과 법률

- 교육기본법 (제18조)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출처 : 교육부,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법명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외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교),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사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보급성),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상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장애인 교육권 확립의 기준으로서 국제규범

-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가입국 정부의 협약 이행 의무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통합교육의 개념

- 특수교육법의 목적 :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호)
- 모든 학생을 위해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조건과 요구 사항의 다양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일련의 가치와 원칙 및 관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24조 교육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4호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공식·비공식 교육 환경에서의 문화,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통해 **학생 개인별로 서로 다른 필요 및 독자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접근성, 출석과 학업성취가 관건이다. ... 통합이 추구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복지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지역사회, 시스템, 사회구조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차별에 맞서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과 참여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정책 및 자원 조달, 행정, 설계, 전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심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4호(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2019)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드리게스 위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견해 중 통합교육 관련 권고사항 (2019)

❖ 교육 및 교육의 목표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para. 41-4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중 통합교육 관련 권고사항 (2022)

❖ 교육 (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당사국이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성,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 교육을 받은 교사 수와 지원인력의 수, 그리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미약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중 **통합교육** 관련 권고사항 (2022)

❖ 교육 (제24조)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5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6)를 다시금 언급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a) 교육 욕구와 필요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단계의 주류 교육에서 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체가 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서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중 **통합교육** 관련 권고사항 (2022)

❖ 교육 (제24조)

특수학교 추가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각각의 요구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함

(대한민국정부 보완보고서, 2022, para. 133-134)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9호(2006)에서 밝혔듯 **통합교육은 장애아동 교육의 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조치는 통합교육의 목표에 역행함
→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의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 필요

2. 장애아동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례 3

-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건강장애학생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난감하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학교장과 서로 담당자가 아니라며 떠넘기는 교직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 시간에는 분리되었고 급식시간에는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투명한 존재이고 특별한 요구가 있어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낙인을 찍어 거부 당하고 분리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아도 되는 관철은 존재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 배경민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은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거리로 나와 이렇게 외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학생은 부모 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등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식사지원, 대소변지원, 더 나아가 석션이나 경관영양을 지원해 줄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없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엄마들이 학교 근처에서 당번을 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권의 기본인 신변처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출처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단법인두루

22

사례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과 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증장애학생인 A 군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해 자세보조용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또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약한 호흡으로 인해 말하는 힘이 부족하고 청력도 좋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미음 등 잘게 된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A 군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 군의 학부모는 입학 초기부터 지원인력 배치,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등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학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와 학부모가 많은 것을 부담하며 감수하고 있다.

[출처 인디고, ‘여전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사단법인두루

23

장애아동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육소외아동 :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특수교육대상자이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소외

- 인적·물적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 방치 및 문제 발생
- 특수교사 업무의 과다로 통합학급 지원 어려움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의 참여 제한(부모 동행 강요 등)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소외에 대한 대응방법은?

장애아동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육소외아동 :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특수교육대상자이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한 아동
(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점심식사, 각종 교내 교육활동에 개인 활동보조사나 부모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경증 청각장애 학생에게 대체평가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영어듣기 평가를 강요하는 경우
-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에서 배제하는 경우
-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상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습·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이해와 포용, 긍정적 변화를 위한 제언

통합교육의 인적, 물적 기반의 확충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 강화
-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및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
- 일반교원 및 학교 관리자,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
- 통합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 도전적 행동에 대한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신변처리 지원 (대소변 지원, 탈착의 지원, 식사지원 등)

캐릭터 소개



별이

"뽕뽕~ 크레인, 유조차, 자동차 좋아~"
발달 장애가 있는 자동차 박사 별이!
소리는 더 크게, 냄새는 더 짙게, 빛은 더 밝게
느껴지는 별이의 세상을 이해한다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미지 출처 : EBS 당동당 유치원]

사단법인 두루 31

중증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과 이들을 포함한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강성리(한경국립대학교 재활복지학부 조교수)

장애의 중증중복화는 심화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받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2. 7. 21.] 제15조 1항에는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중증중복장애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으며 효율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 2의 사례는 ‘중소도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사례에서 나타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발제 내용은 크게 1) 통합교육 시수를 확보하려던 중 나타난 갈등과 2) 통합학급 수업 중 나타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한 특수교사의 지역사회 소규모의 일반학교에 포함된 중증중복장애 아동의 교육문제를 다룬 사례이지만, 우리에게 특수교육전달체계의 지역별 불균등과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학급 중심의 분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가 사례를 통해 제시한 중증중복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의견을 내거자 한다.

1. 중증중복학생의 통합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의견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Downing & Peckingham- Hardin, 2007; Fisher & Meyer, 2002), 이들의 통합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또래와 장애학생의 상호작용 및 우정 형성,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수 환경과 교육과정의 수정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의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은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행정가의 행·재정적인 지원,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교사 간 협력교수의 방법 연수, 통합학급 학생 수의 감축, 부모교육, 장애이해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박소영, 신현기, 2007; 방명애, 정상진, 2001; 최승숙, 2004). 이에 중증중복학생의 통합교육 실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통합교육 지원 교사의 순회교육보다 통합학급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

사 배치 등 통합교육 지원 환경 조성

- 통합학급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필요(일반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목 편성, 일반 교육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특수학급 교육실습 참여 기회 제공, 교장 교감 등 기관의 관리자 교육에 통합교육 실행 및 관련 실무에 대한 연수 의무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었으나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협력 수업 운영 등 통합교육 지원
- 협력 교수 실행 및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일반 교원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2.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중증중복, 지체장애학생 담임교사들은 독특한 교직 경험을 하고 있으며(Lloyd, Zou, & Baurbusch, 2020; Soini et al., 2019), 다른 특수교사들보다 직무스트레스의 강도가 높고 직무만족감이 적을 뿐 아니라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교직 헌신 및 교수효능감이 비교적 일찍 소진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영한, 2021). 교사의 교수효능감, 적응탄력성, 교직 헌신과 소진 등 다양한 교사의 심리적 특성은 학교의 조직 및 특성, 문화와 관련성을 지닌다(김인곤, 방미란, 2018). 학교가 교육의 문제에 주체적 역할을 할 때, 교사는 교육의 발전과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책무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교사 개인의 역량도 함께 성장한다. 이처럼 학교수준 변인(기관장의 지도성, 학습환경, 학교조직문화)에 의해서도 교직적응탄력성 등과 같은 교사의 정의적인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Olson & Roberts, 2020), 교사수준의 개인적 성장과 학교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고민을 가진 특수교사들과 중증중복장애학생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함께 나누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제 2의 자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지 않고는 교육지원의 질을 제고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이 전일제로 운영되는 경우 버거운 수업시수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충원 등 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 중증중복학생의 지원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중증중복장애학생 배치교 학급 신증설 지원
-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 마련

3. 중증중복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

많은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인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이숙정, 2013; 정동영, 2009, 2011). 현행 기본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나 내용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담당교사는 수업운영 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정, 2013). 결국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은 이들을 위한 최상의 실재가 무엇이며, 교육과정을 위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사는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최소한의 기준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송만호, 2023). 중증중복장애학생은 개별적 요구가 높으므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이들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을 권장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구조가 요구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교과목별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방법 등의 수준을 다양화해야 함. 이를 위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측면에서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다수준포함교수법(multi-level instruction)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집 등을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함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별 체제보다 의사소통능력, 신변처리, 자립생활 등 생활 기능 향상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어야 함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와 현장 중심의 지원자료 등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지역별 불균등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최근에 학령기 인구 감소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이 보장되는 교육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통합교육 중심의 지원서비스 구축과 학생중심의 특수교육전달체계 내실화 방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아동의 적절한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 특수교육대상 및 요구 아동이 있을 시 특수학급 배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물리적 공간(학급), 인적자원(교사 및 관련 인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중소도시 및 소규모 학교에 통합교육 협력교수 모델(예:정다운 학교 등), 시범 학교 운영 적용 확대

[참고문헌]

- 김영한 (2021). 중복지체장애학생 담임교사의 교직적응탄력성과 교사수준 및 학교수준 변인의 관계 - 다층모형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1), 1-28.
- 김인곤, 방미란 (2018).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수능력과 개인 및 조직특성 변인의 위계적 관계. *한국교육*, 45(3), 141-164.
- 박소영, 신현기 (2007). 장애유아를 위한 협력교수의 수행요소와 전제조건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1), 173-201.
- 방명애, 정상진 (2001).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6(2), 71.
- 송만호, 박경옥 (2023).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질적메타합성: 비판적 해석학적 합성방법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2), 17-42.
- 이숙정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19-42.]
- 정동영 (2009).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교육과정 통합 쟁점 고찰. *지적장애연구*, 22(5), 227-254.
- 정동영 (201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개선 요구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559-581.
- 최승숙 (2004).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협력교수 실제. *특수교육학연구*, 39(3), 269-292.
- Downing, J., E., & Peckingham- Hardin, K., D (2007). Inclusive education: what makes it a good education for student with moderate to severe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 with Severe Disabilities*, 32(1), 16-30.
- Fisher, M., & Meyer, L. H. (2002).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two years for student enrolled in inclusive and self-contained educational programs. *Education,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7(3), 165-174.
- Lloyd, J., Zou, D., & Baumbusch, J. (2020). Sociodemographic profiles of high school students across multiple types of special needs and disab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al Needs*, 20(4), 279-290.
- Olson, A., & Roberts, C, A. (2020). Navigating Barriers as Special Education Teacher Educator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45(3), 161-177.
- Soini, T., Pietarinen, J., Pyhältö, K., Haverinen, K., Jindal-Snape, D., & Kontu, E. (2019).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d burnout and perceived fit with the professional communit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5(3), 622-639.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 발행일 | 2024년 10월 4일
- | 발행처 | 장애인교육아울다
-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B동 901호
- | 문 의 | 02-3280-9714, 010-9725-1917
- | E-mail | aallda21@daum.net
- | 회원가입 | <https://forms.gle/6c34PmgSXQ5mhEd26>
- | 홈페이지 | <http://www.aallda.org>
- | 지 원 | 아름다운재단  장애인교육아울다  장애인과 어울다

